

데이터로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데이터처

<http://mods.go.kr>

국가데이터처 통계 활용현황

2025. 12.



국가데이터처

개 요

□ **(작성목적)** 국가데이터처 작성 통계*가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현황 파악

* '25. 12. 31. 현재 67종(조사통계 38종, 가공통계 27종, 보고통계 2종)

□ **(작성방식)** 국가데이터처 소관 통계 생산 부서에서 정책부서의 통계 활용실태를 파악*

* 국가데이터처 각 통계작성자가 직접 정책담당자에게 질의

- 아울러,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법령 및 정책을 평가하여 정리한 통계지표 활용현황 점검 자료 등을 참고

□ **(향후계획)** 매년 주기적 보완 및 통계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

■ 목 차 ■

1. 총조사	1
2. 사업체 대상	4
3. 가구 또는 개인 대상	12
4. 기타	20
〈붙임〉 통계별 상세 정책 활용 현황	21

1 총조사 (5종)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경제총조사	○(모집단 제공) 사업체 단위 각종 표본 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웹접근성 실태조사의 모집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 보통교부세·기준인건비 산정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휴가조사 모집단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조사,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농축산식품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산업통상부) 로봇산업 실태조사, 전시 산업 통계조사, 항공산업 실태조사,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 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이력산업 실태조사, 제조업 경기조사 의 모집단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모집단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산업조사의 모집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모집단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실태 조사의 모집단 ○(기후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소방청) 소방산업 통계조사의 모집단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고정자본형성), 2020년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및 산업 연관표 작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2항
농림어업총조사	○(모집단 제공) 농림어업 관련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 추출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어촌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 고령 농업인에 대한 복지대책 등 농업인의 소득 다변화 대책 및 농업 미래 성장산업화 대책,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등에 활용	○지방교부세법 제7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산림청) 임산물정책 수립 및 임업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해양수산부) 맞춤형 수산 정책 등 어민 소득 지원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 ○(각 지자체) 귀농어민(촌) 정책, 농산 어촌 각종 지원사업 산정자료로 활용 ○(FAO 제공) 식량안보 및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로 주기적으로 제공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각종 조사에 모집단 제공)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각종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자료로 활용 * 가구(개인포함) 대상 조사통계 341종 중 239종(70.1%)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2025년 12월 기준) ○(기획재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도별 인구 및 가구 구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제공(매년) * 외국인주민 유형별, 지역별 등 15종 집계표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 * 연도별 읍면동별 총인구, 내국인, 외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읍면동별 인구, 가구 및 주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수요 파악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노인인구, 한부모 가구 등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재정소요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수 ○(보건복지부) 주거약자지원법에 따른 기초 자료 * 고령자 인구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및 주거실태 조사 가중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매년)	○주거기본법 제17조 ○국민연금법 제4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주거약자법 제6조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연면적별 주택수, 노후기간별 주택수 ○(성평등가족부) 한부모, 다문화가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등 관련 정책 기초자료 * 유형별 한부모가구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유형별, 연령별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연도별 자치단체별 자녀수별 가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성별 연령별 인구수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수립, 저출산 대책, 청년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한부모, 다문화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수립에 활용 * 인구, 가구 변화 추이 등	
전국사업체조사	○(행정안전부) 보통 교부세 산정 ○(고용노동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서민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 지원, 대량고용 변동 신고제,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 개선,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현황 ○(산업통상부) 경제자유 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모집단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성평등가족부) 민간사업장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방송통신광고비조사 표본 설계 모집단 제공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등 작성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 사업체 대상 (23종)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건설경기동향조사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 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 정책방향 수립 · 또한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서도 경제 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건설 관련정책 수립 및 동향 분석에 활용 -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건설경기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한국은행) GDP 작성 및 중장기 경제 전망 등에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건설투자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대한건설협회) 건설경기동향조사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통계 정합성 제고 자료로 활용	-
건설업조사	○(기획재정부)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건설업 현황 ○(국토교통부) 건설업 사회보험료 기초 산정자료 및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지표 -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지표 - 건설기업 역량 평가지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간접 활용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사의 사용전 감리 공사 대상기준 선정 ○(한국은행) 국민 계정 통계작성 -건설산업 IO 및 GDP 추계 작성 기초자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시장전망 및 건설정책 지원 ○(연구자료 제공) 각종 경제전망 분석, 건설 투자 및 정책 방향 연구에 활용 ○(모집단 제공) 사업체 단위 관련 표본 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경기종합지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및 예산 수립을 위한 경기 진단 및 분석에 활용 - (경제분석과) 각종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상황 진단 및 전망분석 - (종합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평가를 통한 경제정책 방향 수립 - (예산총괄과) 예산배정 및 자원배분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한국은행) 통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기상황 분석 및 전망에 활용 -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을 위한 경제상황 등 분석 시 기초자료 - (조사총괄팀) 경제전망을 위한 국내외 경제여건 종합평가 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심사 지원을 위한 경제동향·세제 분석에 활용 - (경제분석국) 경제·재정 관련 정책 효과 및 경제전망 분석 ○(연구기관) 경제동향 분석 및 경기 전망 분석에 활용	○법령에서 직접 인용하는 사례는 없으나, 법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간접 활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 시, 세제지원 제도 일몰연장 등에 활용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 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법령으로 확인된 건은 없으나, 다수에서 간접 인용하여 활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 일몰연장, 개별소비세법 자가승용차에 대한 과표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및 입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광공업생산, 업종별 생산 등을 포함한 경제동향 분석자료 및 경제전망시 경제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자승용차에 대한 과표세율 조정 등
광업·제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모집단 및 연간 보정을 위한 자료, 지역소득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산업통상부) 뿌리산업실태조사 모집단 제공 등 산업정책통계 기초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등 17종의 표본설계 모집단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시장구조시책 및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작성 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KDI,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업분석 기초자료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법령은 없으나, 법령시행을 위해 통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계수주동향조사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한국은행)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투자 선행지표 분석을 통해 경제동향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기업생멸행정통계	○(중기부)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적정성 검토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고성장, 가젤기업, 업력별 매출액규모별 기업 등 창업지원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과기정통부) SW기업 성장지원 정책 마련 관련 SW산업 신생기업 생존율 고성장기업 등 ○(지자체 등)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소규모 영세 사업 지원 정책 수립 관련 종사자 규모별 기업수, 신생기업 생존율 등	-
기업특성별무역통계	○(관세청) 수출기업의 무역통계 활용을 통한 산업별 무역효과 분석 ○(산업통상부)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연구기관) 기업무역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활용	-
기업활동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통합모집단 구축 및 관련 통계 조사 및 정보통신 기술산업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기업 실적 분석 및 지역 기업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학술연구) 기업의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등 디지털전환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농림축산식품부 가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채소, 과수 등 수급 및 물가정책, 농림업생산액지수 산출	-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한국은행) GDP, 산업연관표 농림어업 부문 작성 ○(국제기구) OECD, FAO에 제공 ○(연구기관) 농촌 연구자료, 기초자료 등	
산지쌀값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서비스업동향조사	○(기획재정부) 주요 경제지표(생산, 소비)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 ○(산업통상부) 서비스산업의 동향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생산 및 민간소비 부문 분기별 GDP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경기진단에 필요한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
서비스업조사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광고산업 등 정책 수립 및 비교 분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산업(ICT)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기초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시장구조 시책 및 대규모기업 집단시책 수립 시 기초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작성 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업 분석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지수개편 및 연간 보정을 위한 자료, 지역소득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설비투자지수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 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작성 및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설비투자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소비자물가조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물가안정 정책 수립·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회보장수혜금 조정)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조정 ○(기타 사회수혜금 조정) 최저생계비 등 사회보장수혜금 산정 및 조정 ○(임금 등 조정) 임금 조정, 정치자금법에 의한 보조금 조정 등에 이용 ○(디플레이터) 국민계정, 소매판매, 서비스업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의 실질금액 환산에 활용	○고등교육법 제1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국민연금법 제4조, 제5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유아교육법 제25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6조 ○주택법 제58조, 제63조 등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정책 -소비자보호 위한 각종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세청)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전자상거래 규모, 흐름, 전반적인 세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산업통상부)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서비스 정책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모바일 거래액 등에 대한 자료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추진 및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정책 -온라인 수출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운수업조사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정책 및 운수종사자 관리,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 -화물운송종별(일반화물,개인화물) 운송 시장 규모 산정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운수업부문 GDP 추계 및 분석 시 활용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 운수시장 현황분석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국가물류비 작성시 활용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하역비, 물류정보 관리비 산출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및 지역소득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법령은 없으나, 법령시행을 위해 통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물류정책기본법
일자리아동통계	○(고용노동부) 근로자.기업 특성별 일자리 변화, 재취업 등 노동이동 분석 -정부의 고용 및 일자리 자원 정책 수립 ○(기획재정부) 일자리아동 규모, 특성 분석을 통한 경제.일자리 정책 수립 및 대응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기초자료로 활용	-
일자리행정통계	○(고용노동부)기업규모산업.근속기간별 지속 일자리, 변동일자리 현황 분석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기획재정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기초자료로 활용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 공공부문 분석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제기구) OECD, ILO 관련 지표 서비스	-
임금근로일자리 동향행정통계	○(고용노동부) 산업별 지속 및 변동 일자리 현황 분석, 공공민간부문 및 성별.연령별 일자리 현황 분석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기획재정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전산업생산지수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경제분석과) 매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평가 및 최근 경제동향 발표 ○(한국은행) 최근 경제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최근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자료로 활용	-
제조업국내공급지수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 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한국은행)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업종별, 재별 제조업 공급 관련 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프랜차이즈통계	○(산업통상부) 프랜차이즈산업 진흥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현황 확인 등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지원 정책에 활용	-

3 가구 또는 개인 대상 (32종)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가계금융복지조사	○ (기획재정부) 가계부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 여신심사 가이드라인^{'15.12.}, 소득분위별 전월세 비중^{'24.10.} 등 재무건정성 지표 제공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2에 근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매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약 80여개 지원 사업에 활용하여 복지정책 추진 ○ (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월세 대출 심사 시 자산요건(소득5분위별 순자산 평균값)으로 활용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 재무건전성과 자산·부채·소득·지출 관련 현안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13~'23년 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분석(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4.9월)) - 권역별 동향자료 분석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등 52종의 법령에서 간접 인용
가계동향조사	○ (기획재정부) 가구소득, 소비지출 증감을 통한 경기흐름 분석, 소득분배지표를 통한 복지관련 정책 분석 및 수립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책 효과 분석, 정책방향 수립 시 분기 분배지표 활용 ○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최저임금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계통신비 감경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한국은행) GDP 가계최종소비지출 자료와 비교 검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41조, 43조, 46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21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고등교육법 제1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52조, 54조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가축동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시책 및 수급안정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참고 ○(생산자조합및단체) 각 지자체의 주요 산업지표 판단자료 ○(연구기관) 축산경영 및 연구자료로 활용 ○(국제기구) FAO에 제공	○축산법 제32조의4, 축산법 시행령 16조의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농업통계조사 규칙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정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정책수립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업 효과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수립, 대상별 취업 지원, 구직자.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정책, 실업급여 지원대상 현황 및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정책	-
국내인구이동통계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 ○(국토교통부) 자율학교/특목고 우선설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인구 변동 및 귀농어.귀촌인통계 기초자료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에 간접활용
국제인구이동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인구변동 기초자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인력 활용 계획 ○(교육부) 유학생 통계 작성 기초자료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귀농어·귀촌인통계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5개년계획) 수립 -귀농귀촌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희망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대상자별 교육비 지원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지원종합계획(5개년계획) 수립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지원규모 산출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대상 선정 등 ○(산림청) -귀산촌인 관련 정책 수립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농가경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 구성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농업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국토교통부) 농업손실 보상시 보상액 산출 및 이농비, 이어비 보상시 보상액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 ○(행정안전부) 국유재산 대부료율 및 대부재산 평가액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휴업보상금 산출 기초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에 의한 경작용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 기초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소득 산출 기초자료 ○(농촌진흥청) 농업경영 개선 및 지도 사업의 정책자료로 활용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영비 절감, 농가경제 동향 및 전망분석, 경쟁력 제고 등 연구자료로 활용 ○(한국은행) 농어가 부채, 자산 자료 활용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5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2
농림어업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농가·임가 육성 및 고령화 대책 등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어선 현대화 및 수급 관리, 구조개선 등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산림청) 임산물 정책 수립 및 임업 육성의 기초자료	-
농업면적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개간, 간척 등 농지 개발계획 수립·추진,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 계획 수립·시행 등 ○(한국은행) GDP, 산업연관표 농림어업 부문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공급 수혜 면적 산정시 참고,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참고 자료 등 ○(국제기구) OECD, FAO 등에 제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43조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농작물생산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대책 등의 농업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농작물의 명확한 작물 정의 및 포괄 범위 정립으로 정책수립 기초 마련 -농산물 수급 대책 및 재배면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 자료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수량 예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 생산 기초 자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농업관측 실시요령 제14조 ○농업통계조사규칙 제4조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양곡관리법 제16조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데이터처 발표 우유생산비 증감을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조정하는「원유가격연동제」시행('13.8.) ○(조달청) 군부식용으로 조달하는 축산물 가격산정 시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산정	○낙농진흥법 제9조 ○국립축산과학원 종축 배부규정 제5조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조달청지침 제2023 - 9468호, 2023. 12. 21.)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 각종 질병 및 사고 예방 정책에 활용 -자살예방정책과: 자살 예방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설정에 활용 -출산정책과: 영아·모성·태아 사망자료를 모자보건정책 수립에 활용 -질병관리본부: 각종 감염병 및 만성 질환 예방 정책에 활용 -국립암센터: 암 환자 관련 정책에 활용 ○(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 수준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및 사고 예방 정책 수립 ○(기타) 사망원인통계는 생명표, 장래인구 추계 등 타 통계의 기초자료가 되어, 인구 정책에 활용됨	○암관리법 및 시행령(법 제11조, 시행령 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지표, 기획 보도(고령자통계,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생명표(건강수준별 기대여명), 국가발전지표, e-나라지표, 국민삶의질지표, 한국의 사회동향, 삶의 질 보고서 작성에 활용	-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사회보장위원회) 통계로 보는 사회 보장 지표에 활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활용 ○(성평등가족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작성 및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생명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보험료를 산정을 위한 경험생명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장래인구추계 작성 시 사망력 추계에 반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 노근리 사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 법률 1건, 시행령 15건에서 생명표 의 기대여명(평균여명) 지표를 조문에서 직·간접 인용
생애단계별행정통계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원 정책, 고령사회정책 ○(고용노동부) 청년층, 중장년층 일자리정책 ○(기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령사회 및 노후준비 실태 연구	-
생활시간조사	○(국가데이터처) 가계생산위성계정 및 국민시간이전계정 기초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및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정책 수립의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 계획 등 여가정책수립 참고자료 ○(국제기구) UN SDG 지표, OECD BLI 지표	-
소득이동통계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 성장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보건사회연구원) 사회 이동성 진단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 제공	-
신혼부부통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극복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의 주택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금융위원회)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수립 기초자료	-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양곡소비량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양곡 수급계획 작성시 참고 -전체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 작성시 활용 -가구 및 사업체 쌀 소비량 추이를 감안하여 쌀 수급대책 운용 -국내 양곡 생산대책 수립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시 참고 ○(농촌경제연구원) 쌀 소비량 추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양곡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립시 참고 등에 간접활용
어가경제조사	○(한국은행) 어업분야 GDP 산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 -어업부문 설비투자 및 재고증감 추계에 이용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사업, 어촌의 산업화 육성사업, 어촌 특화발전사업 등에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피해보전, 농어업재해 보험 제도 운영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전국)가구와 농어촌가구의 소득격차 비교 등으로 농어업정책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설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수산경제연구원) 근해어업의 경영실적 파악을 위한 어업경영조사의 기획, 분석 등에 참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가부채실태파악 (어가부채 결정요인분석, 소득분위별 어가부채 실태 분석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생계안정비용 책정시 직접 활용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전액 산정시 간접 활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농어업가구 소득안정 직접지불금 책정시 간접 활
어류양식동향조사	○(해양수산부)양식어장 적정이용 및 어장정비 계획 수립, 기르는 어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자료, 양식물 재해보험 금액 산정 참고자료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어업생산동향조사	○(해양수산부)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정책 수립.추진 -어업허가 정수조정 및 어선감축사업 기초자료 -TAC(총허용어획량) 물량배정 -WTO, FTA 협상 양허안 및 영향분석 기초자료 -어획금지 품종지정, 어획금지 기간설정 등 수산자원관리 -어업협정,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의 수산자원 보전 기초자료	-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육아휴직통계	○ 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책부처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법무부) 국내거주 이민자 관련 정책 자료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및 업종별 허용인원 판단의 보조자료 ○(성평등가족부)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 및 참고자료 ○(교육부) 유학생의 취업경험, 취업기간, 취업장소 및 향후 진로계획 등	-
인구동향조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지원정책 및 보건의료정책, 보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수요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성평등가족부) 가족 지원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다문화 등 기초자료 제공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결혼중개업 및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방향과 대 상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간접활용
장래가구추계	○(국토교통부) 도시·군 계획 수립,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환경 개선 정책, 주택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종 가족복지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데이터처) 각종 가구단위 표본 조사의 모수 추정용으로 활용	-
장래인구추계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관련 재정추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건강보험, 보육수당 등 이용대상자 추계, 저출산 및 고령화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 재정전망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추계 ○(교육부) 교원수급, 학생 수급추계 ○(정책지표) 1인당 국민소득, 천명당 주택수 등 주요 정책지표 작성시 추계인구 사용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법 제33조(중·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유아교육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주택소유통계	○(국토교통부) 새로운 주택정책 비전 수립과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주택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획재정부) 투기지역 등의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고용조사	○(기획재정부) 조세지원정책 및 기업투자 활성화 세제지원 정책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 기초자료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정책 지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수립 및 지역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평가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활동촉진 지원 정책, 지역성평등 지수('25년,4월)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교육부)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정책 추진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통한 학교수업 질 제고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 완화 -학원 사교육비 안정 기초자료	-
인구동태패널통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 분석,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활용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정책 지원 기초자료 활용 ○(양성평등부) 양육돌봄 관련 양성 평등 실태 파악 ○(기타) 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청년층 혼인·출산 실태 연구	

4 기타 (7종)

통계명		활용현황	관련법령
가계생산위성계정		○(국가데이터처)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기초자료 ○(연구기관) 여성정책 관련 이슈, 무급노동의 생산적 활동 지원, 사회통합 측면 등의 정책연구, 돌봄 사회화와 돌봄경제 관련 분석연구 등에 활용	-
국민대차대조표		○(한국개발연구원) 잠재성장률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생산성본부) 산업별 생산성분석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국가전체 및 각 구성 경제주체들의 재정 상태 및 건전성 평가에 활용* *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
국민이전계정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입력자료로 활용 ○(연구기관) 인구변화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 평가, 재정전망 등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
북한벼재배면적조사		○(농촌진흥청) 북한 쌀생산량 예측산정시 기초자료 ○(기타) 북한 농업 관련 정책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		○(중점 전략과제10)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과제의 목표지표로 활용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의 지역 안분 ○(지방시대위원회)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방자치단체) 국민경제의 지역분석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에 활용 ○(연구기관) 지역경제의 장기 예측 등 정책분석 보고서에 활용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항
통계인력및예산조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작성의 기초자료	-
연금통계	총괄편	○(국정과제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세부내용에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등 포함 ○(인구정책기획단) 인구구조 변화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연금통계 개발’ 포함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 중 노인 다층 노후 소득보장정책 수립을 위해 연금통계 기반 정밀분석추진 ○(국회 예산정책처) 연금제도 관련 법안 비용추계와 재정전망을 위해 연금통계 가입현황 자료 활용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퇴직연금편	○(고용부) 퇴직급여법 개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 ○(국민연금보험공단) 다층노후소득보장 추계모형 구축에 활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통계명	페이지
1. 총조사 (5종)	
경제총조사	22
농림어업총조사	25
인구총조사	28
주택총조사	28
전국사업체조사	33
2. 사업체 대상 (23종)	
건설경기동향조사	37
건설업조사	39
경기종합지수	41
광업·제조업동향조사	43
광업·제조업조사	46
기계수주동향조사	48
기업생멸행정통계	50
기업특성별무역통계	51
기업활동조사	52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53
산지쌀값조사	54
서비스업동향조사	55
서비스업조사	56
설비투자지수	57
소비자물가조사	59
온라인쇼핑동향조사	70
운수업조사	72
일자리아동통계	74
일자리행정통계	75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76
전산업생산지수	77
제조업국내공급지수	78
프랜차이즈통계	80
3. 가구(개인) 대상 (32종)	
가계금융복지조사	81
가계동향조사	83
가축동향조사	95
경제활동인구조사	97
국내인구이동통계	99

통계명	페이지
3. 가구(개인) 대상 (32종)	
국제인구이동통계	101
귀농어·귀촌인통계	103
농가경제조사	105
농림어업조사	108
농업면적조사	110
농작물생산조사	114
농축산물생산비조사	117
사망원인통계	120
사회조사	122
생명표	124
생애단계별행정통계	130
생활시간조사	131
소득이동통계	132
신혼부부통계	133
양곡소비량조사	134
어가경제조사	135
어류양식동향조사	137
어업생산동향조사	138
육아휴직통계	140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141
인구동향조사	142
장래가구추계	145
장래인구추계	147
주택소유통계	149
지역별고용조사	150
초중고사교육비조사	152
인구동태패널통계	153
4. 기타 (7종)	
가계생산위성계정	154
국민대차대조표	155
국민이전계정	156
북한벼재배면적조사	157
연금통계	158
지역소득	160
통계인력및예산조사	162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과, 담당자 : 042-481-3771]

□ 조사개요

- (목적) 국가 전체 산업의 구조, 분포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소득 추계 및 각종 통계의 모집단 및 기준점 제공
- (대상) 2020년 12월 말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21개 중 19개 대분류(T, U 제외)
 -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내용) 모든 산업에서 조사는 기본항목 13개(사업체명, 조직형태, 사업내용,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와 해당 산업에서만 조사하는 특성항목 0~9개(제품별 출하액, 일일 평균 영업 시간,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 기기 도입 여부 등)
- (공표주기) 5년(2·7자 연도)

□ 정책활용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 현황조사, 웹접근성 실태조사의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실태 조사의 모집단, 보통교부세·기준 인건비 매년 산정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휴가조사 표본설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조사,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 농축산식품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 (산업통상부) 로봇산업 실태조사, 전시산업 통계조사, 항공산업 실태조사,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 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이터닝산업 실태조사, 제조업 경기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의 모집단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산업조사의 모집단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사업체 모집단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관련 시책
- (기후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소방청) 소방산업 통계 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고정자본형성), 2020년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및 산업연관표를 작성, 발표

□ 법령 활용 사례

- (직접인용)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활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상 쇠퇴 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활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4. 기존 산업의 정비·지원 및 신규 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나.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대상 지역 내 사업체 수(「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을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체 수를 말한다)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지역

- (간접활용)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경제총조사 통계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

지방교부세법(행정안전부)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2」 측정항목·측정단위표 중에서 사업체종사자수 활용

농림어업총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3725]

☐ 조사개요

- (목적)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고 소지역(행정리) 단위의 경제활동, 생활 기반시설 등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
- (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농가, 임가 및 어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농·림·어가*와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

[농가·임가·어가]

◆ 조사기준일(2025년 12월 1일) 현재, 농업·임업·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농가

- 2025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24.12.1. ~ 2025.11.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2025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임가

- 2025년 12월 1일 현재, 산림 면적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2020.12.1. ~ 2025.11.30.) 육림(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2024.12.1. ~ 2025.11.30.)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24.12.1. ~ 2025.11.30.)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어가

- 지난 1년간(2024.12.1. ~ 2025.11.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 맨손, 나잠(맨몸잠수), 기타 어로) 또는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해수면 어가)
- 지난 1년간(2024.12.1. ~ 2025.11.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 기타 어로) 또는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내수면 어가)
- 지난 1년간(2024.12.1. ~ 2025.11.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2025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행정리]

- 2025년 12월 1일 현재, 시·군 조례에 따라 읍·면 지역에 설치된 행정리

- (조사내용) 가구원 성명, 성별, 농림어업 종사기간 등 가구원 항목, 경영주 특성, 정보화 기기 등 공통항목(16개)과 농업(33개), 임업(9개), 어업(해수면, 내수면 각 14개), 지역(15개) 항목 조사

농림어가	· (가구원 사항) 성명, 성별, 연령, 국적, 농림어업 종사기간, 형태 등 · (생산기반) 논, 밭, 시설 면적, 산림면적, 어선현황, 어법종류 · (농림어업 생산) 재배면적, 농림어업 고용, 농기계, 양식 품종, 육림업, 벌목 및 양묘업, 채취업 · (농림어업 경영) 경영형태, 판매금액, 경영형태, 판매처, 전·겸업 · (경영주) 종사경력, 교육정도, 혼인상태 · (생활환경) 정보화기기 보유 및 활용, 교통수단 보유
행 정 리	· (기본사항) 읍(면) 사무소 소재지, 빈집 · (교통·시설) 대중교통, 생활편의시설, 생산기반시설, 생산자 조직 등 · (마을·공동체) 도농교류, 마을공동체 활동, 쓰레기 처리

* 조사표 4종, 전체 133개 항목('25.12.1. 현재)

- (공표주기) 5년

□ 정책활용 사례

- 농림어업 부문 대내외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로 활용

- 표본 규모 산정, 층화지표 선정 등의 설계 정보 제공
- 가구, 작물 등 다양한 단위의 표본추출틀*로 활용

*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가축동향조사, 어업 생산동향조사, 에너지총조사 등 70여 개 조사

- 모수추정(사후보정)을 위한 벤치마크 모집단으로 활용

- (농산어촌 정책 반영) 농산어촌 부문별 세부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

- 농업 부문(농림축산식품부)

- 정책 대상 범위, 소득 다변화 등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농가 영농형태별 대책, 경지 이용 및 보전 대책 수립
- 쌀 산업 등 품목별 수급조절 대책 및 농지연금 등 지급에 활용
- 저탄소 농림축산 식품 기반 구축사업에 활용
-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및 농업인 생활 안전 지원 강화에 활용
-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대책 수립

○ 어업 부문(해양수산부)

- 정책 대상 범위, 소득 다변화 등 맞춤형 어업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 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관리, 구조개선 등 어선정책 기초자료
- 양식산업(품종 육성 등) 정책, 수산생물 질병관리 대책에 활용

○ 임업 부문(산림청)

- 정책 대상 범위, 소득 다변화 등 맞춤형 임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산림의 규모화 정책 추진 기초자료
- 임업 형태별, 임산물정책 수립, 임산물 재해관리 등에 활용

○ 보통교부세 산정(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별 재정수요액 산정기준 자료 활용
- 활용항목: 농림어업종사자수, 경지면적(논·밭), 산림면적, 어장면적, 가축사육두수

○ 마을 등 소지역 생태계 측정(지자체, 각 연구기관)

-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정책 마련 및 소지역 개발정책 기초자료
- 소지역 공간지도 플랫폼과 타 통계자료의 연계를 통해, 과소화·소멸 위험도를 측정하여 출산율, 부양비 등 정책 필요통계 생산
- 사각지대에 있는 농산어촌의 교통, 보건, 복지 등 인프라 확충

□ 법령 활용 사례

-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농림어업 총조사 통계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관리를 통하여 “임업·산림 직접지불제” 정책 집행 등을 위해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 042-481-3752, 3756]

□ 조사개요

- (목적)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의 총수, 구조, 분포와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는 물론 학술연구, 개인사업 등의 자료로 제공하고, 각종 통계 조사의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으로 활용
- (대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방법) 전수항목은 등록센서스, 표본항목은 현장조사
 - 전수항목: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실시
 - * 2024년 기준 16개 항목(인구부문 10개, 가구부문 1개, 주택부문 5개)
 - ** 주거시설 형태, 총방수, 주거시설 수는 5년주기로 추가 작성
 - 표본항목: 전체 국민의 20% 방문면접조사 실시
 - * 2025년 기준 55개 항목(인구부문 35개, 가구부문 14개, 주택부문 6개)
- (공표주기) 전수 1년(일부항목은 5년이상), 표본 5년

□ 정책 활용사례

-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 제공)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각종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자료로 활용
 - * 가구(개인포함)대상 조사통계 341종 중 239종(70.1%)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 (2025년 12월 기준)
- (기획예산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연도별 인구 및 가구 구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매년) 제공
 - * 외국인주민 유형별, 지역별 등 15종 집계표
- (행정안전부) 샌다이프레임워크 관련 재난 통계 작성
-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참고자료로 활용
 - * 연도별 읍면동별 총인구, 내국인, 외국인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읍면동별 인구, 가구 및 주택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수요 파악
 - * 인구 및 가구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 노인인구, 혼인상태 현황 및 한부모 가구 등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재정소요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 *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수
- (보건복지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료
 - * 고령자 인구
- (국토교통부) 주택관련 통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매년) 제공
 - 주택보급률 기초자료
 - * 가구 수 및 다가구 구분거처수 포함 주택 수
 - 주거실태조사 가중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 단독주택 유형별 가구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 연면적별 주택수, 노후기간별 주택수
-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유·청소년 등 대상사업 관련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
 - *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 다문화가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등 관련 정책 기초자료 및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본조사 모집단 명부 제공
 - 한부모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 유형별 한부모가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기초자료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별·연령별 현황 등 통계자료 제공
- (교육부) 교육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 연령별 청소년, 시도별 외국인 수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치단체별 자녀수별 가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 * 성별·연령별 인구수(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학령인구, 외국인 등)
- (지자체) 기본계획의 기초자료
 - 2030 서울시·경기도 도시기본계획
 - * 인구변화 추이, 가구수·가구규모 추이,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이
 - 2030 서울시·부산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 * (서울시) 유형별 주택현황, 점유형태별 주택시설, 규모별 주택시설, 가구당 및 1인당 사용방수, 사용면적, 연도별 평균 주택규모 및 평균 가구원수
 - * (부산시) 연면적별 거주인수별 주택
 - * (경기도) 경과연구 및 주택종류별 주택, 점유형태별 비율, 평균 주거면적, 평균 사용방수, 주거시설 비율, 지역별 인구·가구 현황
 - 경상남도 5개년(2020~2024) 인구정책기본계획
 - * 저출산, 고령화 추이
 - 2025년~2026년도 경기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 * 성별 19세 1인가구 수

- (지자체) 주요계층별 가구(미혼모·부, 한부모, 다자녀, 1인) 지원방안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충청북도 다자녀가구 대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 자녀수별 가구 현황
 - 진주시 한부모가족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 유형별 한부모가구 및 가구원수 현황
 - 서울시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 * 자치구 및 자녀수별 가구 현황
 - 충주시 다자녀가구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 자녀 연령 및 자녀수별 가구 현황
 - 부산시 소지역단위 맞춤형 보건사업 지원 계획
 - * 읍면동별 교육정도 인구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 등
- (지자체) 외국인, 다문화 가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 대전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 * 시군구별 다문화가구 및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 법령 활용사례

- (직접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되는 인구 및 가구 언급

1.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 (간접활용) 주거기본법 상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 · 설비 · 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 ·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 ·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3. 주거약자법

제6조(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 · 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과, 담당자 : 042-481-3780]

□ 조사개요

- (목적)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규모·분포 및 추이 변화를 파악, 사업체 단위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틀 제공
- (대상 및 내용)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모든 사업체, 9개 항목(대표자,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 (공표주기) 연간(잠정공표(9월) 및 조사확정(익년 5월))

□ 정책활용 사례

-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매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제공
※ 【관련법령】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및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규모별 사업체 현황 제공, 고용노동통계 작성을 위한 모집단 제공
※ 【관련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동향 및 경영애로요인을 파악을 위한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사업체명부 제공(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 【관련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성평등가족부) 민간사업장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1항, 동법 시행령 22조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모집단 제공
※ 【관련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4항(경제자유구역통계의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등, 방송통신광고비조사 표본 설계 모집단 제공
※ 【관련법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 제44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등 작성
- (기타) 조사수행, 연구목적, 정책수행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도시상권분석, 산업별 밀집도 및 경쟁력 분석, 도시산업 입지패턴 분석 등

□ 법령활용 사례

- (직접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지원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4. 기존 산업의 정비·지원 및 신규 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나.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대상 지역 내 사업체 수(「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을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체 수를 말한다)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지역

- (간접활용) 지방교부세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통계자료를 활용

1. 지방교부세법(행정안전부) 제6조 및 제7조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1과 2」 측정항목·측정단위에서 사업체 종사자수 활용

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세분류를 언급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4. 2. 29., 2025. 2. 28.>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정의) ⑥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제21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9.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업의 결과를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정책의 기초 현황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현황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경기동향조사

[산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158]

□ 조사개요

- (목적)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조사하여 국내 건설 활동의 단기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경제정책·경영계획 수립과 GDP 추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 및 내용)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발주자·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집계
- (조사단위)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 (공표주기) 매월 공표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 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매년 6월,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매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근경제동향 발표)
- (국토교통부) 건설 관련정책 수립 및 동향 분석에 활용
 -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건설경기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은행) GDP 작성 및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 (GDP 작성) 분기 건설업 GDP 생산 및 건설투자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전망)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기관*) 건설투자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 KDI, 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민간연구원 등
- (대한건설협회) 건설경기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통계 정합성 제고 자료로 활용
- (통계작성기관) 국가데이터처의 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지역소득(GRDP) 추계, 한국은행의 GDP 추계 등에 필수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건설업조사

[산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2201]

□ 조사개요

- (목적) 건설업 부문의 종사자수, 급여액, 매출액, 부가가치, 공사 실적 등의 조사를 통한 건설업 부문의 구조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기업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대상 및 내용)
 - 대상 : 건설업종을 등록하고 건설 활동을 수행한 기업체
 - 내용 : 공사명, 공사종류, 공사지역, 발주자, 원도급자, 도급종류, 계약방법,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계약액, 기성액, 종사자수, 연급급여, 매출액 및 비용 등
- (공표주기) : 매년

□ 정책 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토교통부) 건설업 사회보험료 기초 산정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지표
 - 건설 인프라 경쟁력 평가지표
 - 건설기업 역량 평가지표
- (방송통신위원회) 공사의 사용전 감리공사 대상기준 선정

- (한국은행) 국민 계정 통계작성

- 건설산업 IO 및 GDP 추계 작성 기초자료

- * 국가데이터처 GRDP 추계 기초자료 제공

- (건설산업연구원) 국내외 건설산업 시장전망 및 건설 정책 지원

- (모집단제공) 사업체 단위 관련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 (연구자료 제공) 조사수행, 연구목적, 정책수행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경기종합지수

[산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208]

□ 조사개요

- (목적)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 동향 파악 및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경기변동의 국면, 전환점, 속도 및 진폭 측정을 목적으로 함
- (내용) 생산, 소비, 고용 등 부문별로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 지표를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선행·동행·후행종합지수, 선행·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확산지수를 작성함
- (공표주기) 월간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예산 편성을 위한 경기 진단·분석에 활용
 - (경제분석과) 각종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상황 진단 및 전망분석
 - ※ 매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발간
 - (종합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평가를 통한 경제정책 방향 수립
 - ※ 매년 「경제정책방향」, 반기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예산총괄과) 예산배정 및 자원배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 (한국은행) 통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기상황 분석 및 전망에 활용
 -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을 위한 경제상황 분석 시 기초자료
 - (조사총괄팀) 경제전망을 위한 국내외 경제여건 종합평가 등
 - ※ 분기별 「경제전망보고서」, 「경제상황평가」 발표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심사 지원을 위한 경제동향·세제 분석에 활용
 - (경제분석국) 경제·재정 관련 정책 효과 및 경제전망 분석
 - ※ 매년 「경제전망」, 「중기재정전망」, 매월 「경제동향&이슈」 발간
- (연구기관) KDI,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및 경기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
 - ※ 매년 「국내경제전망」, 반기별 「경제전망」, 매월 「경제동향」 등 발간

□ 법령 활용 사례

- (간접 활용) 법령에서 직접 인용하는 사례는 없으나, 법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 시, 세제지원제도 일몰연장 등에 활용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산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161]

□ 조사개요

- (목적) 광공업 생산·출하지수 및 제조업 재고·생산능력·가동률 지수를 작성·제공하여 국내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 및 내용)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 부문의 생산, 출하 동향과 제조업의 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파악하여 광공업 생산·출하지수 및 제조업 재고·생산능력·가동률지수를 작성
- (조사단위) 개개의 사업체 단위로 조사
- (조사방법)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및 사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 (공표주기) 매월 공표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매년 6월,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안조정회의 등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매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근 경제동향 발표)

-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 *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및 기자간담회 자료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 * 격월 단위로 NABO 경제동향 및 이슈 발표
 - ** 매년 10월경 다음 연도 및 중기 경제전망 발표
- (연구기관*) 광공업생산, 업종별 생산 등을 포함한 경제동향 분석자료 및 경제전망시 경제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 * KDI,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 (통계작성기관) 국가데이터처의 경기종합지수·전산업생산지수 작성 및 지역소득(GRDP) 추계,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추계, 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지수 작성 등 가공통계의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
- (학술연구) 국면별 제조업에 미친 충격을 분석하거나*, 재고율을 활용한 경기 분석**하는 등 학술연구에도 활용
 - *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제조업 경기변동 분석, 박성근 외(2023)
 - ** 재고율로 본 국내 제조업 경기와 시사점, 주원 외(2016)
- (각종 협회) 철강협회, 레미콘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각종 협회와 자료 공유 및 통계 정합성 제고

□ 법령 활용 사례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법령으로 확인된 건은 없으나, 다수 법령에서 간접 인용하여 활용
 - 개별소비세법 자가승용차에 대한 과표세율 조정,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 등에 활용

1. 개별소비세법, 과표세율 조정 사유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절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지역의 주된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지역 산업기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된 산업의 고용 또는 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주된 산업의 **생산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2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요건) ③ 영 제6조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전국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100 미만이면서 전년 동기 간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

제3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요건) ③영 제7조제3항제3호는 다음 각 호 중 두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전국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100 미만이면서 전년 동기 간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광업·제조업조사

[산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2138]

☐ 조사개요

- (목적)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
- (조사범위) 『B 광업』, 『C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2024.1.1.)
- (조사대상)
 -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조사기준 연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조사기준 연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 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재고액, 유형자산(사업체) 등 13개 항목
- (공표주기) 매년

☐ 정책활용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시장구조시책 및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 각종 경쟁정책 수립,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수립시 독과점 시장구조 고착 여부, 시장규모 등을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대상 업종 선정
- 시장 중점감시 대상업종 선정시에도 시장집중도, 시장규모 등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활용

- 개별 사건처리 시 조사결과 활용

- 품목별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등은 심사보고서상의 시장 현황 자료작성 등에 참고

- 시장구조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여 시장구조의 집중화 정도, 독과점구조 고착산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간표 작성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 법령 활용 사례

○ 법령에 직·간접으로 광업·제조업조사통계 법령 활용 명시 없음

○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관리를 통하여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지표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권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계수주동향조사

[산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158]

□ 조사개요

- (목적) 설비용기계류를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체의 수주액을 조사하여 국내 설비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정책 및 기업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중 설비용기계류를 생산하는 업체
 -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조사단위) 국내에서 설비용기계류를 생산하는 기업체
- (공표주기) 매월 공표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매년 6월,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매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근경제동향 발표)
-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 (한국은행)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화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기관*) 투자 선행지표 분석을 통해 경제동향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 (기타) 국가데이터처 경기종합지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각종 학술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업통계팀, 담당자 : 042-481-3691]

☐ 조사개요

- (목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기업의 신생, 소멸, 생존율, (고)성장 등 기업의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 등을 파악·분석
- (대상 및 내용) 활동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규모별, 지역별, 조직형태별, 대표자 연령별·성별, 기업규모별, 업력별 기업의 신생률, 소멸률, 생존율 작성
 - * 국내의 영리기업 중 당해 연도에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 수립 및 확인제도 및 고성장(가젤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 운영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산업별, 업력별, 조직형태별 활동 기업 수 등 세부 기초자료 활용
 - 매출액 및 고용창출에서 성장성이 큰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고성장 기업’ 및 ‘가젤형 기업’의 범위 및 기준 마련 시 활용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관련 창업 지원 사업 성과 지표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관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관련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업 수 및 매출액 자료 제공
- (지자체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청년창업 지원 사업 수립 등을 위한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업특성별무역통계

[기업통계팀, 담당자 : 042-481-2156]

☐ 조사개요

- (목적) 무역과 기업 자료의 연계·결합을 통한 다양한 추가정보를 생성하여 무역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자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우리나라에서 해당연도에 수출입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관세청의 무역통계와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기업생멸행정통계 및 기업통계등록부) 간 연계·결합한 기업, 농림어업 법인 및 공기업 등이 포함
 - * 무역과 기업자료 간 미연계, 비영리기업 및 개인(외국인 포함) 자료도 합계에 포함
- (내용) 기업규모·종사자규모·산업분류별 무역 규모 및 기업 수 등
 - 1) 기업자료: 기업규모·종사자규모·산업분류별 구분에 따른 수출입 규모 및 기업 수
 - 2) 무역자료: 무역유형(단방향·양방향), 국가·지역별, 교역상대국가수별, 재화성질별(소비재·원자재·자본재), 재화특성별, 무역집중도, 수출강도(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 평균수출강도 등 지표 제공
- (공표주기) 분기(2월, 5월, 8월, 11월)

☐ 정책활용 사례

- (관세청) 수출기업의 무역통계 활용을 통한 산업별 무역효과 분석
- (산업통상부)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 (연구기관) 기업무역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업활동조사

[기업통계팀, 담당자 : 042-481-3860]

☐ 조사개요

- (목적)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업의 경영전략·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분석 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
 - 대상산업: 전산업(단 공공분야, 자가소비, 외국기관 등 제외)
 - 조사항목: 기업의 일반사항, 기업내 조직 및 종사자수, 유·무형 자산, 관계회사 사항, 국내외 기업 간 거래, 기업의 경영방향, 재무구조 및 사업내용
- (공표주기) 연간 공표

☐ 정책활용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통합모집단 구축 및 관련 통계 조사 및 정보통신기술 산업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기업 실적 분석 및 지역 기업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547]

□ 조사개요

○ (목적)

-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를 편제 하고, 농가경제를 가격측면에서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농가판매품 75개(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0개 기관)
 - 농가구입품 407개(전국 142개 시군의 190여개 농가 및 사업체, 농협 경제지주, 농림부 국립종자원 등 13개 기관)
- 조사내용 : 농가판매품 75개, 농가구입품 407개

○ (작성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매월 15일, 공표주기 : 분기

□ 정책활용 사례

주요 수요처	활용 내용
농 립 축 산 식 품 부	· 농림업 생산액 및 지수 산출 · 채소, 과수 등 관련 수급 및 부가정책 수립
국 가 데 이 터 처	· 지역내총생산(GRDP) 농림업부문 추계
한 국 은 행	· GDP, 산업연관표 농림어업부문 작성
연 구 기 관	· 농촌 연구자료, 기초자료 등
e-나라지표 및 국정핵심지표	· 농가교역조건지수*를 산출하여 서비스
국 제 기 구	· OECD, FAO(식량농업기구)에 제공
주 요 언 론 기 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촌경제상황 기사화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산지쌀값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547]

☐ 조사개요

○ (목적)

- 양곡관리법의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쌀 생산농가,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게 시장출하·매매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

○ (대상 및 내용)

- 조사시군 : 전국 116개 시군(구)
- 조사대상 : RPC*(농협·민간), DSC**(농협·민간), 도정공장

*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 : 논에서 수확한 높은 함수율의 물벼를 산물상태로 건조, 저장, 도정하여 제품으로 출하하는 공정을 일관작업이 가능한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농업시설

** DSC(Drying Storage Center, 벼 건조저장시설) : RPC의 건조 저장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건조 저장 전용 시설

- 조사내용 : 20kg단위 정곡 전국 평균 가격

○ (작성 및 공표주기) : 순기 공표

- 조사기준일 : 매월 5일, 10일, 15일, 공표주기 : 순기

☐ 정책활용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 공공비축미곡의 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지쌀값조사 결과활용

1.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190]

☐ 조사개요

- (목적) 서비스업부문 사업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평가, 기업의 경영실태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료
 - 주요 경제지표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분기별 GDP 추계 등)
 - 서비스업생산동향, 소비동향, 유통동향의 분석 자료
-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2017. 1. 13.)상의 21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개 산업
 - * E :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G : 도소매업, H : 운수 및 창고업, I : 숙박 및 음식점업, J : 정보통신업, K : 금융 및 보험업, L : 부동산업, M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 교육서비스업,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 :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공표주기) 매 월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주요 경제지표(생산, 소비)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
- (산업통상부) 서비스산업 동향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 기초자료
- (한국은행) 서비스업 및 민간소비 부문 GDP 추계 기초자료
-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경기진단에 필요한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 법령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서비스업조사

[산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2184]

☐ 조사개요

- (목적) 서비스업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서비스 산업 정책 수립 및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1개* 대분류 E, G, I, J, L, M, N, P, Q, R, S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25만개 사업체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61 제외),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제외),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851~854 제외),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제외)
 - 내용 : 사업내용, 사업실적,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 기기 도입 여부, 건물 연면적, 객실 수 등(28개 항목)
- (공표주기) 매년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시장구조시책 및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은행)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서비스산업 분석자료

☐ 법령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관리를 통해 서비스업관련 법령 제·개정 시 서비스업조사 관련 통계지표를 관련 정책에 활용하도록 권고

설비투자지수

[산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158]

□ 조사개요

- (목적) 국내 설비투자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관련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범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중 설비투자 배분액이 있고 월간 자료 입수가 가능한 66개 부문별로 작성(기계류 및 운송장비)
- (작성방법) 개량상품흐름법*을 이용하여 월별 내수 출하액 및 수입액에서 중간수요, 소비 등을 차감하여 설비투자재의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지수화
 -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 상품의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지출항목을 추계하는 상품흐름법을 변형(국산투자액 추계방법을 개선)하여 산출과정 효율화
- (공표주기) 매월 공표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수립(매년 6월,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매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근경제동향 발표)
 -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작성 및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 (GDP 작성)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설비투자 작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전망)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기관*) 설비투자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 (통계작성기관)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한국은행 국민계정 등의 작성을 위한 필수 기초자료, 국가데이터처 경기종합지수 작성의 참고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
- (기타) 한국정책금융공사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IBK 경제연구소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의 참고 및 분석자료, 각종 학술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소비자물가조사

[물가동향과, 담당자 : 042-481-2531]

□ 조사개요

- (목적) 정부의 경제정책,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수혜금,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 등에 필요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물가의 변동에 따라 화폐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 물가는 경기상황에 따른 수요 증감으로 인하여 변동하기 때문에 경기판단 지표로 활용
- 현재의 금액을 과거 일정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 디플레이터로 활용

- (대상 및 내용) 물가조사 지역은 40개 시(도), 조사품목은 458개 품목, 조사대상처는 약 26,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 집세는 약 12,000개 임차가구

- (조사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용인, 화성, 안산, 고양,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아산, 서산,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진주, 창원, 김해, 양산, 제주도
- (조사품목)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이 되며,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458개 품목
- (조사주기와 횟수)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는 월 3회(초순, 중순, 하순에 1일씩) 조사하고, 공업제품(중순, 3일)과 전기·가스·수도 및 서비스 품목(하순, 2일)은 월 1회 조사한다.

- (공표주기) 매월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물가안정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수립 및 평가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및 기준금리 결정

□ 법령 활용 사례

- 각종 법령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물가지수 등 직접인용
 -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수혜금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의 각종 금액 산정,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참고자료 > 최저임금법에 소비자물가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외국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사례(발췌: 노동법률 2018,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의 과제'(김강식))

- (일본)근로자 생계비·근로자 임금·사업별 임금지급능력 / (프랑스)소비자물가지수와 평균 임금인상률 / (독일)근로자 최저생활 보호·고용보호·협약임금인상률 / (네덜란드)물가인상률·평균 임금인상률 / (캐나다)소비자물가지수 / (영국)경제 및 경쟁력에 미칠 영향 / (아일랜드)근로자 생계비·고용·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평균임금인상률을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다수

활용현황 및 관련 법령

○(연금 조정)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조정

- 공무원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5조(연금액의 조정)
-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51조(기본연금액)
-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 군인연금법 제14조(연금액의 조정) 등

○(임금, 계약 등 조정) 임금, 계약금액, 등록금, 보조금 조정 등에 이용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및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 주택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기타 사회수혜금 조정) 최저보장수준 등 사회보장수혜금 산정 및 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최저보장수준)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6조(기초급여액)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2. 고등교육법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9. 12. 3., 2020. 10. 20.>

3.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7.>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나. **물가상승률**

4.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5.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②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제35조(연금액의 조정)

-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6. 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개정 2005.8.4.>

7.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1. 26.>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6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25조(생활조정수당)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2023. 5. 23.>

제34조의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 ②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 5. 23.>

10.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80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타당성재조사)

-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08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13. 국민연금법 [법률 제2058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4.>

제51조(기본연금액)

-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1. 6. 8.>

- ①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⑥ 법 제 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 상황, 국민의 재산·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1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④ 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16. 군인연금법 [법률 제20019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17. 기초연금법 [법률 제1821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다음연도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 21.>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料率)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2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80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2019.4.23.>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9.29. 타법개정]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9호, 2024. 8. 6., 타법개정]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신설 2014.9.25.>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4. 9. 25., 2021. 6. 30.>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2021. 1. 5.>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 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6.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76호, 2021. 7. 6., 일부개정]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27. 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2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3호, 2023. 9. 22., 일부개정]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30.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5조(유치원 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3. 27.>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2015. 3. 27., 2020. 1. 29.>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3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12호, 2024. 8. 6., 일부개정]

제6조(채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6. 4.>

제27조(재활용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33.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822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12.11.>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8.3.27., 2019.1.15., 2020. 1. 21.>

3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55호, 2024. 1. 18., 일부개정]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35.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 타법개정]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3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87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37. 정치자금법 [법률 제1992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2.29.>

38. 주택법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8.12.24.>

40. 철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95호, 2023. 10. 10., 일부개정]

제4조(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이하 “여객 운임”이라 한다)의 상한을 지정하는 때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이하 “사업용철도노선”이라 한다)의 분류와 법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2013.3.23., 2016.6.28.>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1조(대출 금리)

- ②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과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2021. 3. 23.>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21. 3. 23.>

4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0.23.>

4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49조(공제료)

-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195]

□ 조사개요

- (목적)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연구소 및 각종 협회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인터넷상 B2C* 거래를 주로 하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약 1,100개)를 대상으로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 취급상품범위 및 운영형태별 거래액 등을 조사
 - '14년부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관세청 수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는 관세청 수입목록 중 전자상거래로 거래되어 국내로 반입된 통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 인터넷 비즈니스
- (공표주기) 월
 -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는 분기 공표

□ 정책활용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책
 - *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세청)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 * 전자상거래 규모, 흐름, 전반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산업통상부)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
 - *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서비스 정책

*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모바일 거래액 등에 대한 자료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추진 및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정책

*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법령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운수업조사

[산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2551]

☐ 조사개요

- (목적) 운수·창고업 및 물류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운수·창고업 및 물류산업 관련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전국에서 운수·창고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체(54개 업종) 중 전수 및 표본으로 선정된 운수·창고 및 물류 서비스업체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과 물류서비스업 기업체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매출액, 영업비용 등 조사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정책 및 운수종사자 관리, 국가 물류기본계획 수립 등의 주요통계로 활용
 - 화물운송종별(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운송시장 규모 산정 등
 - 대중교통정책 및 물류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운수업부문 GDP 추계 및 분석 시 활용
-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 운수시장 현황분석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국가물류비 작성 시 활용
 -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하역비, 물류정보관리비 산출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물류정책 연구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법령에 직·간접으로 운수업조사통계 법령 활용 명시 없음
-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관리를 통하여 운수업조사 관련 통계지표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권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물류정책기본법

일자리이동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042-481-3658]

☐ 조사개요

- (목적)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고용 및 미래 일자리 지원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취업자)의 주된 일자리가 대상임
 -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비임금 근로자 외 공무원, 교직원 등도 대상에 포함됨
 - 활용 행정자료 : 4대 사회보험, 직역연금 및 과세자료 등 30여종
 - 작성 항목 : 근로자(등록취업자)별 주된 일자의 진입·유지·이동 및 미등록 현황
 - * 근로자 특성별(성/연령/종사상지위/근속기간) 및 기업 특성별(조직형태, 기업규모, 종사자규모, 산업) 이동현황 및 기업 간 이동자의 이동분석 등
- 작성주기 : 연간
- 기준시점 : 매년 12월(12.1.~31.) 기준으로 기준년 간 연계·비교분석

☐ 정책활용 사례

- (활용분야)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BH,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사례) 정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적 특성별 일자리 이동 규모 분석, 기업규모(대·중소기업)·종사상지위(임금·비임금)·산업·임금수준별 일자리 이동현황 분석 등

☐ 법령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일자리행정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042-481-3656]

☐ 조사개요

- (목적) 고용·노동 등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 및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작성
 - *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어업 생산활동 경영인이 점유한 일자리는 제외
 - 활용 행정자료 :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과세자료 등 30종
 - 작성 항목 : 인적항목(성, 연령, 근속기간, 종사상지위, 소득), 기업체 항목(기업종류, 기업규모, 종사자규모, 산업)
- 작성주기 : 연간
- 기준시점 : 일자리편(연간), 소득편(12월), 공공부문(연간)

☐ 정책활용 사례

- (활용분야)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및 국제기구(OECD, ILO)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사례) 민간·공공부문 등 일자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업규모(대·중소기업)·산업·근속기간별 지속 및 변동일자리 현황 분석, 공공·민간부문 및 연령별 일자리 현황 분석 등

☐ 법령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042-481-3658]

□ 통계 개요

- (목적) 분기별로 일자리 변동 및 유형을 파악하여 고용·노동 등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 및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기준시점* 현재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한 개 이상 신고된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작성
 - * 기준시점 : 매분기 중간월(2월, 5월, 8월, 11월) 기준으로 작성
 - ※ 단, 활용하는 행정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는 제외
 - 활용 행정자료: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공동사업자등록자료, 카드거래사업자목록 등 8종
 - 작성 항목: 【인적항목】 성, 연령 【기업체항목】 산업, 조직형태 【일자리형태】 전체 및 지속, 신규, 대체, 소멸 일자리
- (공표주기) 분기 (작성대상 분기 종료 후 5개월 이내)

□ 정책활용 사례

- (활용분야)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정책 수립(BH,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 (활용사례) 소득주도 성장, 공공부문 등 일자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산업별 지속 및 변동(대체, 소멸, 신규) 일자리 현황 분석, 공공·민간부문 및 성별·연령별 일자리 현황 분석 등

□ 법령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전산업생산지수

[산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169]

☐ 조사개요

- (목적) 우리나라 경제 전체 산업의 경제동향과 경기변동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 및 내용)
 - 대상 : 전산업생산
 - 내용 :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 등 5개 산업군의 생산 활동을 총합하여 지수로 작성
- (공표주기) 매월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경제분석과) 매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평가 및 최근 경제동향 발표
- (한국은행) 최근 경제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연구기관*) 최근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 KDI, 산업연구원 등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제조업국내공급지수

[산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175]

□ 조사개요

- (목적) 국내에 공급되는 제품의 공급동향을 월간단위로 시의성 있게 파악함으로써 관련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1개 대분류 「제조업(C)」
 - 광공업생산·출하지수 중 광업(B), 전기가스업(D)은 불포함
- (작성방법) 품목별로 국산 및 수입 금액(실질)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한 후, 각각을 합산하여 업종별·재별 공급 금액(실질)을 산출하고 이를 지수화
- (공표주기) 분기 공표(월 KOSIS 공개)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동향 분석자료에서 활용
 - (종합정책과) 국내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을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수립
 - 또한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서도 경제상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분석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 제시
 - (예산총괄과) 세출·입 전망을 위한 경제상황 판단의 기초자료

- (한국은행) 중장기 경제전망 등에 활용
 - (경제전망)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중장기 경제전망을 위한 기초 자료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하여 국회 예산심의 및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기관*) 업종별, 재별 제조업 공급 관련 동향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프랜차이즈통계

[산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2187]

☐ 통계 개요

- (목적) 서민경제와 밀접한 프랜차이즈(가맹점) 업종에 대한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약 31만개 사업체
 - 방법: 행정자료 입수 및 조사자료 결합을 통해 생산
 - ※ 교육서비스업, 콜택시 등 일부 업종은 작성 제외
 - 내용: 사업내용, 사업실적, 특성항목 등(16개 항목)
- (공표주기) 매년

☐ 정책활용 사례

- (산업통상부) 프랜차이즈산업 진흥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현황 확인 및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관계 등에 관한 정책자료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지원 정책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통계과, 담당자 : 042-481-2360]

□ 조사개요

- (목적) 가구부문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또한,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복지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대상 및 내용) 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 일반가구
 - 가구주 및 가구원 특성,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운용 계획,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지출, 노후생활 등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가계부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 여신심사 가이드라인^{'15.12.}, 소득분위별 전월세 비중^{'24.10.} 등 재무건정성 지표 제공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2에 근거,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매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약 80여개 지원 사업에 활용하여 복지정책 추진
- (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월세 대출 심사 시 자산요건(소득5분위별 순자산 평균값)으로 활용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 재무건전성과 자산·부채·소득·지출 관련 현안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 '13~'23년 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분석(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4.9월))
- 권역별 동향자료 분석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 중

□ 법령활용 사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간접적으로 활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9646호 2023.8.16 일부개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가계동향조사

[가계수지동향과, 담당자 : 042-481-6952, 2213]

□ 조사개요

- (목적)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대상 및 내용) 전국에 거주하는 1인이상의 일반가구(농가포함)
 - 가구실태 관련 항목: 조사담당자 면접 방식
 -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관련 항목: 응답자 기입 방식(종이 및 전자가계부)
- (공표주기) 분기(소득, 지출), 연간(지출)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가구소득, 소비지출 증감을 통한 경기흐름 분석, 소득분배지표를 통한 복지관련 정책 분석 및 수립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정책 효과 분석, 정책방향 수립 시 분기 분배지표 활용
-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최저임금 심의 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계통신비 감경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한국은행) GDP 가계최종소비지출 자료와 비교 검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 가중치 산정

□ 법령 활용 사례

○ 자격요건, 보상금 책정 등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법령에서 인용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7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 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 5. 23.>

제53조의2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 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1.] [대통령령 제33537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9조의3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 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 5. 23.>

제9조의10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 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3.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9조 (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2조 (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 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1조 (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 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 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6.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 2023. 6. 14.] [대통령령 제33500호, 2023. 6. 7., 일부개정]

제22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국가데이터처리가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1. 29.>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8조 (보상금)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2조 (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9.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24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9조의3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 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1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 5. 23.>

제59조의2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1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6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40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리가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 1. 5.>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3호, 2023. 4. 17., 일부개정]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8.>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4. 17.>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13. 부미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미항쟁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9조 (생활지원금)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8.>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1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55호, 2023. 8.1., 일부개정]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1.>

16. 고등교육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 2019. 12. 3., 2020. 10. 20., 2021. 3. 23., 2021. 9. 24.>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일부개정]

제47조의5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18.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법률 제15712호, 2018.6.12., 일부개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8.] [대

통령령 제33895호, 2023. 11. 28., 일부개정

제38조(임사거주시설의 공급) ② 임사거주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9. 17., 2021. 10. 14.>

1.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세대주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2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7조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 7. 17., 일부개정]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 11. 10., 일부개정]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6. 11. 15., 2018. 5. 4., 2020. 9. 29.>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0. 9. 29., 2021. 2. 2., 2021. 11. 16., 2023. 2. 28.>

1. 공급요건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 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 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1. 공급요건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23. 2. 28.>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 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20. 9. 29., 2021. 2. 2.>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21. 2. 2.>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9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2. 2., 2021. 11. 16., 2023. 2. 28.>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0. 9. 29.>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text{제1호에 따른 금액} + \{5\text{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times [(\text{제1호에 따른 금액} - 2\text{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div 3]\}$$

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국토교통부령 제1258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0. 10. 19., 2021. 2. 2, 2022. 2. 28., 2025.10.31.>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 3)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2. 2>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275호, 2023. 11. 20., 2025. 12. 19 일부개정]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9., 2020. 12. 10., 2025. 6. 4.>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1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주택유형	공급비율	임차인 자격
가.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80퍼센트 미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한다)

나.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20퍼센트 이상	1) 청년: 무주택자로서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라)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3)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65세 이상인 사람 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

비고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유형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별표에서 "일반공급주택"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는 경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그 임차인을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임차인 요건 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임차인 자격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1)가) 및 다)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요건
 - 나) 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2)가) 및 나)에 따른 혼인 및 소득 요건
 - 다) 나목3)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3)나)에 따른 소득 요건
- 나목1)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갖추어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후 혼인하여 같은 목 2)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2. 주택유형별 세부 비율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임차인 유형별 세부 비율은 임대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공급비율(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비율”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우선공급 등

가.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또는 세입자(이하 “기존거주자”라 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기존거주자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기존거주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설립된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 제32조 제5항제3호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나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라.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예비임차인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제1순위: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2) 제2순위: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3) 제3순위: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31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8조의3(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①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가축동향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3670]

□ 조사개요

- (목적)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농장)수와 성별·연령별 마릿수를 파악하여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 주요 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의 성별·용도별 가구(농장)수 및 마릿수
- (조사대상)
 -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현재 일정규모(닭 용도별 3,000수, 오리 용도별 2,000수)이상 사육하고 있는 가구
 - 표본조사: 약 2,800 농장(2015.03.01 기준 돼지이력제에 등록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 리스트 중 표본 선정)
- (작성 및 공표주기) : 분기
 - 조사주기 : 3월, 6월, 9월, 12월
 - 공표주기 : 분기
- 자료 주요활용

주요 수요처	활용내용
농 립 축 산 식 품 부	· 축산시책 및 수급안정자료
지 방 자 치 단 체	· 각 지자체의 주요 산업지표 판단자료
한 국 은 행	·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참고
생 산 자 조 합 및 단 체	· 축산경영 및 농축농가 지도자료
연 구 기 관	· 축산경영 및 연구자료로 활용
국 제 기 구	· FAO(식량농업기구)에 제공 *연1회, 4/4분기 결과
사 료 회 사, 등 급 판 정 소	· 사료생산 등 경영 기초자료로 활용
축 산 농 가	· 축산경영 자료

□ 법령 활용사례

- (직접인용) 축산물(축종:한육우, 젓소, 돼지, 닭고기, 오리) 수급상황 분석,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74호, 2020. 8. 26., 일부개정]

제16조의7(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가축동향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이하 생략)

- (간접활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농장 식별번호 발급 서류, 닭·오리 사육현황 신고 변경 등을 위해 가축 동향조사 축종별 사육현황을 비교자료로 간접 활용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통계과, 담당자 : 042-481-2265, 2565]

☐ 조사개요

○ (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노동공급, 고용구조, 노동시간 등 인력자원의 활용정도 제공

○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조사대상주간(15일이 포함된 주)에 3만6천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 ※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조사내용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54개 항목

○ (공표주기) 매월

☐ 정책활용 사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 ①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 (기획재정부)

- ① 인구위기대응 정책 수립

- 여성 · 고령층 ·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 등
- 고령층, 청년층 고용률 등

- ② 취약계층 지원 정책수립

- 특고현황

○ (고용노동부)

① 두루누리 사업* 효과 분석

*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수립

③ 대상별 취업 지원

④ 구직자·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정책

⑤ 실업급여 지원대상 현황 및 확대

⑥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정책

* 정규직 전환사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추계팀, 담당자 : 042-481-2514]

☐ 조사개요

- (목적) 대한민국 국민의 지역별 인구이동 규모와 이동의 방향, 이동자 특성 등을 파악하여, 경제와 산업, 주택, 교통, 교육 등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별 인구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시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한 '전입신고서'를 바탕으로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거주지 이동자 중 읍면동 경계를 벗어난 경우
- (공표주기) 월간 및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계획 수립
 - 지역별 전입자수/전출자수/전입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 농어촌 전입/전출자수

□ 법령 활용 사례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방지를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인구이동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 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중인구, 취업 인구 등 인구의 증감
나.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내 인구의 이동 및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인구의 이동
2. 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국제인구이동통계

[인구추계팀, 담당자 : 042-481-2261]

□ 조사개요

- (목적) 인구변동 요인 중 상주개념에 따라 체류기간이 90일/1년을 초과하는 장기이동자를 대상으로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여 현재인구 작성과 장래인구추계 및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 상주개념에 따라 체류기간이 90일/1년을 초과한 장기이동자
 - 자 료 원 : 법무부 출입국심사자료
 - 집계항목 :
 - 내국인 : 입국, 출국, 순이동, 출입국일자, 출입국 항구, 성, 연령
 - 외국인 : 입국, 출국, 순이동, 출입국일자, 출입국 항구, 성, 연령, 국적, 체류자격
 - 작성방법 : 개인별 출입국 일자를 파악하여 체류기간이 90일/1년을 초과한 국제이동자 집계
- (공표주기) 매년, 매월('13년 7월부터)

□ 정책활용 사례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인구변동 기초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 인력 활용 계획
- (교육부) 유학생 통계 작성 기초자료
-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인통계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2479]

□ 조사개요

- (목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귀농어·귀촌인 규모 및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귀농어·귀촌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작성대상) 11.1일 기준 현재, 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기간(전년 11.1.~작성 기준년도 10.31.) 중 읍·면지역으로 이동한 자
- (작성항목)
 - 귀농인 통계(14개) : 시도 또는 시군, 성, 연령, 가구, 가구원수, 귀농 전·후 거주 지역, 이동유형, 가구구성 형태, 재배작물, 재배면적, 농지임차, 겸업여부, 사육가축 현황
 - 귀촌인 통계(9개) : 시도 또는 시군, 성, 연령, 가구, 가구원수, 귀촌 전·후 거주 지역, 이동유형, 가구구성 형태, 전입사유, 귀산촌 현황
 - 귀어인 통계(10개) : 시도, 성, 연령, 가구, 가구원수, 귀어 전·후 거주 지역, 이동유형, 가구구성 형태, 겸업여부, 종사업종 현황
- (통계작성 기준일) 매년 11월 1일
- (법적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책활용 사례

- 농식품부
 -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5개년계획) 수립
 - 귀농귀촌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희망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상자별 교육비 지원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의 증가에 따라 귀농귀촌 관련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제고 등

○ 해수부

- 귀어귀촌 지원종합계획(5개년계획) 수립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지원규모 산출
-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대상 선정 등

○ 산림청

- 귀산촌인(산촌내 귀농어·귀촌인) 관련 정책 수립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없음

농가경제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301]

□ 조사개요

- (목적) 농가의 수입, 지출, 자산 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 및 각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 전국 3,300 표본 농가
- (조사내용)
 - ① 조사표 : 가구원현황, 가구특성, 작물재배현황, 농작물수입, 가축사육현황, 농업잡수입, 농업외수입, 농업외지출, 농업지출, 농업노동투입내역, 가계지출
 - ② 원 부 : 토지, 건물, 기계·기구·비품, 대·소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부채, 금융자산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 구조 분석 기반의 맞춤형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농가 자산 및 부채 현황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도시·농촌 가구소득 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산출 기초자료
 - 식물방역법에 의한 피해 농업인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산출 기초자료
-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 손실보상, 이농비 및 이어비 보상 산출 기초자료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경작용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 기초자료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휴업보상금 산출 기초자료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에 의한 경작용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 기초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소득 산출 기초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 개선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영비 절감, 농어가경제 동향 및 전망분석, 경쟁력 제고 등 연구자료

○ (한국은행) 농업 분야 GDP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법령 활용 사례

1.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① 법 제78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5. 국가데이터처: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관련 자료

농림어업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2479]

☐ 조사개요

○ (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 추이 파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연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의 가구 중 조사기준일 현재 농가·임가·어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
- 조사내용
 - 농가 : 가구원, 경지면적, 수확 및 재배면적, 가축, 판매 및 영농 형태, 전업 및 겸업, 영농 전문화 등
 - 임가 : 가구원, 임업생산 및 경영, 임업형태 및 전·겸업 등
 - 어가 : 가구원, 어선현황,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형태, 판매 및 전·겸업 등

○ (공표주기) 매년(끝자리 “0”, “5”인 년도 제외)

☐ 정책활용 사례

○ (농식품부)

- 농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기초자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대책 수립

-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경지이용 및 보전 대책, 농지연금 기초자료
- 쌀산업 등 품목별 수급 조절 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대책(배수개선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기초자료
-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사업(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축분뇨 처리 대책) 기초자료
- 농산물 유통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농업인 소득 다변화 정책 기초자료
- 농업경영제 정보화 촉진 대책 및 정보화 주요지표로 활용

○ (해양수산부)

- 수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 관리, 구조개선 등 어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생산동향 및 어획품종 변화에 대응한 국내 수산물 수급 정책
- 양식산업 각종 정책(10대 양식품종 육성 대책, 수산생물 질병관리 대책, 어장 이용 개발 계획 등)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산림청)

- 임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임업형태별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 임업인 소득 다변화 정책 기초자료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없음

농업면적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6954]

□ 조사개요

- (목적)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 안정 계획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

- (조사대상)

- < 경지면적 >

- 모집단 : 2019~2020 경지총조사를 통해 구축한 79만개의 경지모집단 조사구
 - 표본 : 3.2만개(원격탐사 : 1만개, 현장조사 : 2.2만개)

- ※ 현장조사 대상표본 2.2만개는 재배면적 표본과 동일

- < 재배면적 >

- 전국의 경지를 약 2ha±20% 내외의 크기로 구획하여 79만개의 모집단 조사구를 설정하고, 그 중 2.2만개의 조사구(표본 조사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실시

- (조사내용)

- < 경지면적 >

- I) 최신의 위성영상(KOMPSAT 3·3A호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방식이나, ii)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지조사 방식으로
 - 표본조사구내 경지의 변화된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국(지역별)의 경지면적(논, 밭, 계) 및 증감사유별 면적을 추계

- < 재배면적 >

- 표본조사구 내 두렁면적, 경작가능면적, 작물별(107개) 재배면적, 휴경면적 등

○ (작성 및 공표주기)

< 경지면적 >

- 조사주기

- 원격탐사 방식에 의한 조사(1만개) : 매년 5월~12월(약 7개월)
- 현장방문에 의한 조사(2.2만개) : 11월 재배면적조사 기간에 병행

- 공표주기 : 매년

< 재배면적 >

- 조사주기 : 3월, 5월, 7월, 9월, 11월(작물재배시기를 기준)

- 공표주기 : 매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12월은 KOSIS만 공표}

□ 정책활용 사례

주요 수요처	활용 내용
농 립 축 산 식 품 부	· 식량, 채소 등 농산물수급 안정 계획 수립 · 개간, 간척 등 농지개발계획 수립 · 추진 ·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 계획 수립 · 시행 · 농지의 보전 및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 농산물생산액 등 각종 가공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
지 방 자 치 단 체	· 각 지자체의 주요산업지표 판단 자료 · 쌀 등 식량생산 추정자료 등 · 농가지원사업, 식량생산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
한 국 은 행	· GDP, 산업연관표 농림어업부문 작성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농업용수 공급 수혜 면적 산정시 참고 ·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참고 자료 등
국 제 기 구	· OECD, FAO 등에 제공, 농업통계 국제 비교지표로 사용
농 촌 경 제 연 구 원 , 학 교 등 연 구 기 관	· 농촌 연구자료, 각종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등
농 산 물 유 통 공 사	· 농산물수급의 기초자료 및 각종 자료 작성 등

□ 법령 활용 사례

< 경지면적 >

○ 시행령 2건, 시행규칙 1건에서 경지면적 조사를 조문에서 직접 인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내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3.4.25., 2015.4.28.>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④ 대의원회의는 동별·리별로 수혜자의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3.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 재배면적 >

○ 시행령 1건, 규칙 2건, 훈령 2건에서 재배면적 조사를 조문에서 직접 인용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2. 농업통계조사규칙

제4조(조사사항)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농작물 재배면적

3.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59호]

제2조(미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 ① 미곡 생산량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해당연도 쌀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를 활용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및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관측 전망 등을 바탕으로 예상생산량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농업관측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79호]

제14조(자료수집) 농경연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농가 및 품목별·축종별 관측모니터,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저장업체 등 관련업체를 연결하는 농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

5. 국가데이터처 : 품목별·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단수 확정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축산물생산비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

5.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77호]

제5조(위원회 운영) ③ 위원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나. 국가데이터처 :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

농작물생산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3788]

□ 조사개요

- (목적) 식량생산계획, 토지이용의 개선, 농업경영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대책 등의 농업정책 수행과 학술연구 및 국민계정 등 타 가공통계의 기초 자료 제공
-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조사방식	작물	조 사 항 목	
실측	논 벼	예상량	1㎡당 포기수, 포기당 이삭수, 유효이삭수, 총난알수, 완전난알수, 10a당 예상생산량, 피해상황, 품종, 모내기 방법 및 시기
		실수확량	6㎡당 조제벼 중량, 1/8조제벼, 1/8건조벼, 6㎡당 생벼짚, 피해상황, 크기별 중량, 수분함량 등
	밭 벼	예상량	10a당 예상량, 수확예정일, 피해상황
		실수확량	6㎡당중량, 1/4중량, 수분함량, 피해상황
	콩	실수확량	6㎡당 건조곡중량, 피해상황
	봄감자, 고랭지감자		3㎡당중량, 피해상황
	마늘, 양파		3㎡당포기수, 생중량(20개당, 3㎡당), 피해상황
	가을배추, 가을무		3㎡당수량(포기수, 중량), 피해상황
면접청취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실수확량	필지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10a당 생산량, 피해상황
	고 추		
	참 깨		
	사과, 배		

○ (작성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3월 ~ 12월, 공표주기 : 매년

□ 정책활용 사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재배면적 확대 방안의 추진상황 점검에 활용
 - 농협 계약재배 확대 및 봄배추 모종나누기 행사 등 관련 정책에 활용
- 농작물의 명확한 작물 정의 및 포괄범위 정립으로 정책수립 기초 마련
- 조기 수급 대책 마련
 - 재배면적 감소, 가뭄·고온 등으로 수급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시의성있게 자료를 제공하여, 조기수립 대책 추진으로 물량 안정 공급
- 현실에 맞는 수급자료 생산
 - 계절작형에 대한 생산통계를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수급자료 생산
- 농업관측정보 생산 기초 자료
 - 관측월보, 관측속보, 분기보와 관측전망 기초 자료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24년 현재 법률 1건, 대통령령 1건, 부령 1건, 훈령2건에서 생산량 조사를 조문에서 직접 인용

1.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5조(위원회 운영)

- ④ 위원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국가데이터처 :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

2. 농업관측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04호, 2021. 6. 14., 일부개정.]

제14조(자료수집) 농경연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농가 및 품목별·축종별 관측모니터,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저장업체 등 관련업체를 연결하는 농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

5. 국가데이터처 : 품목별·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단수 확정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축산물 생산비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

3. 농업통계조사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3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4조(조사사항)

-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농작물 재배면적

2. 농작물 예상 생산량

3. 농작물 생산량

4. 그 밖에 농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46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6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 및 통계자료(이하“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다만, 생산량과 생산액의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과 출하액으로 한다.

5. 양곡관리법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3670]

□ 조사개요

○ (목적) 농·축산농가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축산업 정책수립과 농·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농산물 (1,530농가)	· (논벼) : 1,980m² 이상 재배하는 농가 · (콩) : 660m² 이상 재배하는 농가 · (고추) : 660m² 이상 재배하는 농가 · (마늘) : 660m² 이상 재배하는 농가 · (양파) : 660m² 이상 재배하는 농가
축산물 (1,400농가)	· (7개 축종) : 한우 번식우, 한우 비육우, 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 등

○ (조사내용)

농산물	· (수익성) 재배면적, 수확량, 판매수입 등 · (생산성)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토지용역비 등 18개 비목
축산물	· (수익성) 사육현황, 생산량, 판매수입 등 · (생산성) 가축비, 사료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 26개 비목 · (기 타) 사료작물 재배 관련 14개 비목

○ (작성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매월, 공표주기 : 연간

○ 자료 주요활용

주요 수요처	활용내용
농 립 축 산 식 품 부	· 농축산시책 및 수급안정자료
농 촌 진 흥 청	· 농업경영개선 및 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한 국 은 행	· 농축산분야 GDP 산정시 기초자료 · 농축산업 손실 보상기준 산출 기초자료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토지용역비 관련 농지은행 운영대책 기초자료
연 구 기 관	· 농축산경영 및 연구자료로 활용
학 계 / 민 간 연 구 단 체	· 농축산연구 기초자료
축 산 국 립 과 학 원	· 축산연구 기초자료
법 원 / 법 무 사	· 농축산업 손실 보상 분쟁조정 산출 기초자료
한 국 부 동 산 원	· 축산업 보상 기초자료
축 산 단 체	· 축산경영개선 연구 및 소득보전자금 기초자료
농 축 산 농 가	· 축산경영 자료

□ 정책 활용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데이터처 발표 우유생산비 증감을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 시행('13.8.)
- (조달청) 군부식용으로 조달하는 축산물 가격산정 시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산정(조달청지침 제2023 - 9468호, 2023. 12. 21.)

□ 법령 활용사례

- (직접인용) 간척지 가경작 운영, 기준으로 농산물생산비조사 자료 활용

1.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5.12.] [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25-50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④ "직접생산비"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쌀 생산비 중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 (간접활용) 낙농진흥법 원유의 계약 생산 구입 가격, 종축 배부 가격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

1. 낙농진흥법[시행 2021.1.1.] [법률 제17007호, 2020.2.18., 타법개정]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2.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시행 2025.4.1.][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22호,2025.4.1., 일부개정]

제5조(가축배부 가격)

① 가축배분 기준가격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조사 발표한 최근 3년 이내 평균 산지가격, 가축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망원인통계

[인구동향과, 담당자 : 042-481-2251]

□ 조사개요

- (목적)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인구정책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지원
- (대상 및 내용) 국민 전체의 사망 규모, 원인, 지리적 분포 등을 파악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행정안전부) 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산출
 - 예방안전과: 지자체에 대한 안전사고 평가지표인 ‘지역안전지수’에 사망원인통계의 감염병, 자살사망률 활용
- (보건복지부) 각종 질병 및 사고 예방 정책에 활용
 - 자살예방정책과: 자살 예방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설정에 활용
 - 출산정책과: 영아·모성·태아 사망자료를 모자보건정책 수립에 활용
 - 질병관리청: 각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 정책에 활용
 - 국립암센터: 암 환자 관련 정책에 활용
- (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 수준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 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정책 수립
- (기타) 사망원인통계는 생명표, 장래인구추계 등 타 통계의 기초 자료가 되어, 인구정책에 활용됨

□ 법령 활용 사례

○ (직접인용) 암관리법 및 시행령상 암 검진사업 및 역학조사 지정 판단기준에 활용

1.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암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 및 「**통계법**」에 따른 **사망원인 통계**, 그 밖의 의학적인 전문자료에 근거하여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경우

○ (간접활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판단기준에 활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하여 모자보건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령에서 사망원인 통계를 활용하도록 권고

- 암관리법 및 시행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핵예방법
- 모자보건법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사회조사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 042-481-2242]

□ 조사개요

- (목적)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대상 및 내용)
 - 대상 : 18,576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 내용 :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조사
 - * (홀수년)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짝수년)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 (공표주기) 연간
- (관련부처 협의) 매년 조사항목 선정 시 부문별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및 회의를 통해 항목 보완(추가, 수정, 삭제 등)

<부처 요청 항목>

- ① '선호하는 장례 방법' 조사 중단 제외, 선택 항목 구성 변경 요청(장사 정책 수립과 장례문화 발전방안 마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보건복지부, 2021년)
- ② 일.가정 양립제도 항목에 '시간선택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추가, 근로 여건만족도 항목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추가 요구(노동부, 2017년)
- ③ 주5일 근무, 격주제 근무 등의 내용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삭제하고 주 40 시간 근무 등 현재 사용되는 공식용어 변경 요구(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 ④ 법제처의 차별적 법령용어 개정을 참고하여 직업과 성에 대한 편견을 주는 "파출부"를 "가사도우미"로 용어 변경 요구(여성가족부, 2019년)
- ⑤ 대학원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성별 전공 일치도 파악 필요하므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질문 문항에 대학원 추가(여성가족부, 2020년)
- ⑥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의료기관 보기 항목을 의료법상 구분(병상 수 기준)으로 분류 수정(보건복지부, 2020년)

- (자료 활용)
 - (청내) 건강 수준별 기대여명 추정* 및 e-나라지표** 등 활용

* 물리적인 기대여명 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대한 지표(건강수준별 기대여명)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조사 항목(건강평가, 유병기간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

** 노후준비방법,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 현금기부인구, 독서인구,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고령자통계,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등 정책대상별 보도자료 작성에 활용

- (외부) 통계 결과는 관련부처에서 활용*하거나 대국민 공개(KOSIS, MDIS 등)되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로 활용

* 성평등가족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작성에 활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음주인구비율, 자원봉사활동, 기부인구 등) 수록 등

☐ 정책활용 사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목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 과제에 사회조사 항목의 조사결과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지표에 활용

○ (성평등가족부)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정책 관련 기초자료 제공(내부자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통계연보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생명표

[인구동향과, 담당자 : 042-481-2251]

☐ 조사개요

- (목적)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출생 집단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령별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정리
- (대상 및 내용) 국민을 대상으로 기대수명, 성·연령별 기대여명, 특정연령까지의 생존확률, 특정 사망원인 제거 시 증가되는 기대여명,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시도별 기대여명 공표
- (공표주기) : 매년, 2년(건강수준별), 3년(시도별)

☐ 정책활용 사례

-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경험생명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장래인구추계 작성 시 사망력 추계에 반영

☐ 법령 활용 사례

- (직접 인용) 법률 1건, 시행령 7건에서 기대여명 지표를 조문에서 직접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생략)

1. ~ 3. (생략)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생략)

1. 2. 가. 나. (생략)

- ② 제1항나목에 따라 계산할 때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 기까지의 연수는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생략)

1. ~ 2. (생략)

3. 종신통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통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통기금보험을 말한다.

1. ~ 2. (생략)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 5. (생략)

4.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간병비) 피해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한다

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료지원금)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금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1. (생략)
2.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46만 3천원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기간 동안 보조장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료지원금)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 2. (생략)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료지원금)

- ① 1. ~ 2. (생략)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 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료지원금)

- ① 1. ~ 2. (생략)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 (간접 인용) 시행령 9건에서 ‘평균여명’ 용어로 간접 인용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남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남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별 평균여명**기간(이하 “평균여명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3.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업가능기간)

(생략)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1. (생략)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3. (생략)

3.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

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耐久)연수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생략)

5.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간병비·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최고 99만원부터 최저 33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요양기간및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장애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생략)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보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애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5년 4월 16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생략)

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12월 5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생략)

9.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1. (생략)
2.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생애단계별행정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042-481-3626]

- (목적) 각 연령층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작성을 통하여
생애단계별 정책수립에 필요한 인구·가구, 경제활동, 경제상황
등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매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에 해당
하는 내국인과 그 내국인을 포함하는 일반가구
 - * 외국인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는 제외
 - ※ 청년층(만 15~39세), 중장년층(만 40~64세), 노년층(만 65세 이상)
- (내용)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 수집된 행정자료 또는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통계 DB 등을 상호 연계·결합하여 작성

	작성 내용
인구	인구 현황, 인구 이동(시도), 혼인 및 이혼(인용)
경제활동	취업자 현황, 경제활동 변동, 신규 및 종전 취업자 현황, 개인기업체 신규등록자
경제상황	평균소득, 대출잔액, 개인의 주택소유, 개인의 소유주택 자산가액, 연금가입 및 수급(인용)
건강	건강보험 진료비(인용), 기대여명(인용), 사망(인용)
가구	가구, 가구원수, 가구 유형,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주거	거처유형, 주거 면적, 가구의 주택소유, 가구의 소유주택 자산가액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원 정책 및 고령사회정책 수립 등에 활용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중·장년 일자리정책 수립 등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생활시간조사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 042-481-2237]

☐ 조사개요

- (목적) 개인의 시간 활용과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대상 및 내용)
 - 대상 : 표본가구(약 1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 내용 : 가구관련사항, 개인관련 사항, 시간일지(주행동/동시행동, ICT 기기 사용여부, 행위장소/이동수단, 함께있던 사람 등)
 - * 시간일지 작성 : 응답자당 2일씩 시간일지 작성
- (공표주기) 5년
- (자료 활용)
 - 지표누리(e-나라지표, 저출생통계지표, 국가발전지표) 활용
 - * (성별, 혼인상태별,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부모별 자녀돌봄시간
 - KOSIS, MDIS를 통해 관련 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활용

☐ 정책활용 사례

- (국가데이터처) 가계생산 위성계정 및 국민시간이전 계정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정책^{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 (국제기구) UN SDGs 양성평등 및 여권 신장 관련 지표, OECD BLI(Better Life Index) 일과 삶의 균형 지표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소득이동통계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 042-366-7308]

☐ 통계개요

- (목적) 상대적 소득분위의 이동 추이를 분석하여 사회계층 이동성 파악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 사회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등록센서스에 등록된 개인 및 가구 20% 표본
- (작성방법) 국가데이터처 인구가구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정보를 결합하여 패널 형태 데이터를 구축하여 소득분위 이동 분석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사회계층 이동성 파악과 경제·사회 불평등 완화 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 방향」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042-481-2544]

☐ 조사개요

- (목적)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출산·보육, 경제활동 및 주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저출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대상 : 매년 11월 1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 중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부부 중 1명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내용 : 인구특성, 가구, 자녀, 경제활동, 주택 등 21개 항목
- * 주택공급 등 정책대상이 되는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 보조지표 작성·제공
- (공표주기) 매년(최초 공표 2016.12.26)

☐ 정책활용 사례

- 저출산 극복 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마련 자금 지원 강화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버팀목 대출한도 상향 및 버팀목(전세)·디딤돌(구입) 신규대출시 금리 우대
-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양곡소비량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302]

☐ 조사개요

- (목적) 양곡수급계획, 식생활개선, 식량생산 목표설정, 식량문제 연구 등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가구부문 : 1,400가구 (농가 500가구, 비농가 900가구)
 - 사업체부문 : 약 3,200사업체 (식료품·음료제조업 해당 사업체)
- (조사항목) 가구부문은 양곡소비량, 사업체부문은 쌀소비량 조사
 - 가구부문 : 가구원사항, 외식/결식/접대횟수, 월초/월말재고량, 월중수입량/지출량
 - 사업체부문 : 사업체 관리사항, 쌀 소비량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 수급계획 작성시 참고
 - 전체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 작성(매년 6~7월)시 활용
 - 가구 및 사업체 쌀 소비량 추이를 감안하여 쌀 수급대책 운용
 - 국내 양곡 생산대책 수립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시 참고
 - * 1인당 양곡소비량과 정부 쌀 재고량, 생산량을 고려하여 정부보유곡 공매 등 방출시기 및 물량 결정
- (농촌경제연구원) 쌀 소비량 추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간접인용)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립시 참고

어가경제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301]

□ 조사개요

- (목적)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전국 1,000 표본 어가
- (조사항목)
 - ① 조사표 : 가구원현황, 가구특성, 어선현황, 어장현황, 어로·양식 수입, 수입표, 지출표, 가계지출
 - ② 원 부 : 토지, 건물(건축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식물, 대·소동물, 무형자산, 미처분 농수산물, 사용중인 어업용자재, 미사용 구입자재, 부채, 금융자산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한국은행) 어업분야 GDP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어업부문 설비투자 및 재고증감 추계에 이용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사업, 어촌의 산업화 육성사업, 어촌 특화발전사업 등에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 농어업 재해 보험제도 운영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도시(전국)가구와 농어촌가구의 소득격차 비교 등으로 농어업정책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설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수산경제연구원) 근해어업의 경영실적 파악을 위한 어업경영조사의 기획, 분석 등에 참고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가부채실태파악(어가부채 결정요인분석, 소득분위별 어가부채 실태 분석 등)

□ 법령 활용 사례

- (직접인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한 생계안정비용 책정시 활용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漁家)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어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생물의 종류별·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③ 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 (간접인용) 어가소득 결과를 자유무역협정 또는 자연재해 시 피해 보상금 산정 또는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지원금 책정시 참고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전액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농어업가구 소득안정 직접지불금 책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어류양식동향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482]

□ 조사개요

- (목적) 어류양식 경영체(어가 및 사업체)의 양식품종, 시설현황, 입식량, 생산량, 양식현황, 먹이(사료)를 준 양 등을 조사하여 양식 어업 관련 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어가경영의 합리적 의사결정, 양식연구, 수산관측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조사대상) 해상 또는 육상의 양식시설에서 바닷물을 이용하여 바다에 사는 어류를 양식하는 전국의 모든 경영체(어가 및 사업체)
- (조사항목) 양식어종, 양식방법, 시설면적(사육수면적), 양식현황, 입식량, 생산량, 생산금액, 먹이(사료)를 준 양, 재투자량(중간육성어, 방류)
- (공표 주기) 매 분기

□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활용 사례

- (해양수산부) 양식어장 적정이용 및 어장정비 계획 수립
 - 기르는 어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자료
 - 양식물 재해보험 금액 산정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시·군·구별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활용
- (국립수산물과학원) 어류양식 산업의 발전 및 신기술 개발 관련 자료
- (지방자치단체) 양식어장 적정 이용, 어장정비 계획 수립
 - 양식어가 기술지도 참고자료,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사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류 생산·유통 전망, 수산업관측

□ 법령 활용 사례

-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관련하여 ‘양식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의 기초현황·집행 및 성과 평가를 위하여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 「어류양식동향조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어업생산동향조사

[농어업동향과, 담당자 : 042-481-2595]

□ 조사개요

- (목적) 어업생산동향조사는 매월 연근해해역과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동향을 파악하여 수산물의 수급정책, 한·일, 한·중 어업협정, 수산자원 회복사업, 원양산업 육성 등 수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수산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의 연구 분석 및 평가자료로 활용제공

○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조사별		조 사 대 상	조사단위
연 근 해 어 업	계 통	○ 수협에서 운영하는 위·공판장 - 수협중앙회 및 회원·업종별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사업체
	표본조사	○ 표본어가(어선 및 어촌계 표본) - 위판량 및 전수조사 대상, 양식품종 생산량은 제외	가 구 (사업체)
	비 계 통 전수조사	○ 어업협정 및 수산정책 수립 시 주요품종 중 표본오차가 큰 품종 * 까나리, 근해장어통발의 봉장어 ○ 피조개(경남지역) - 진해구: 어가(사업체)는 전수조사, 어촌계는 행정자료(진해수협) 활용 - 마산합포구: 어촌계 및 개인 모두 전수조사 ○ 전남도의 꼬막류(꼬막, 새꼬막) 행정자료 활용 - 비계통에서 꼬막류(꼬막, 새꼬막)는 조사 제외 ○ 제주도 어촌계(마을어업) 행정자료 활용 ○ 곤쟁이, 베도라치, 멸치 행정자료 활용(충남, 근해안강망)	가 구 (사업체)
해 면 양 식 업	계 통	○ 수협에서 운영하는 위·공판장 - 수협중앙회 및 회원·업종별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사업체
	표본조사	○ 표본어가(어촌계 표본) - 양식품종(수하식 등)에서 조사되지 어촌계(바닥식 등)의 품종	가 구 (사업체)
	비 계 통 전수조사	○ 해상 및 육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주요 품종 - 어류, 가리비류, 대하, 모자반, 개꼬시래기, 우렁쉥이 * 통영·거제지역 우렁쉥이는 행정자료 활용(명계수협) ○ 피조개(경남지역) - 진해구: 어가(사업체)는 전수조사, 어촌계는 행정자료(진해수협) 활용 - 마산합포구: 어촌계 및 개인 모두 전수조사 ○ 전남도의 꼬막류(꼬막, 새꼬막) 행정자료 활용 - 비계통에서 꼬막류(꼬막, 새꼬막)는 조사 제외	가구 및 사업체

조사별			조 사 대 상	조사단위
해 면 양 식 업	비 계 통	양 식 품 종 조 사	○ 양식품종 중 집단 시설로 표본(전수)조사가 가능한 품종 < 표본·전수 조사 >	가 구 및 사 업 체
			○ 갑각류(1종) : 흰다리새우 ○ 해조류(8종) : 김, 미역, 청각, 다시마, 톳, 매생이, 파래, 곰피 ○ 패류(2종): 전복, 홍합 ○ 기타수산동물류(2종) - 미더덕, 오만둥이 * 행정자료 활용지역은 제외 * 시군구별 30호 미만은 전수조사	
			< 행정자료 활용 > ○ 김(부산, 전남, 전북, 충남) ○ 미역(부산, 울산, 전남) ○ 굴(전남, 경남, 충남) ○ 전복(전남) ○ 홍합(전남, 경남) * KMI 수산물축자료	
내 수 면 어 업	어 로		○ 내륙지 수면에서 어구나 맨손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가	가 구
	양 식		○ 내륙지에서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가 * 뱀장어(전라도): 행정자료 활용, 비계통 출하분은 현행대로 조사	가 구 및 사 업 체
원양어업			○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양자원과를 통해 보고 받은 어획량 자료	사 업 체

나. 조사항목 : 어구어법·품종별 생산량, 생산금액

○ (조사주기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매월, 공표주기 : 매월 말일

□ 해양수산부 정책활용 사례

-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정책 수립·추진
- 어업허가 정수조정 및 어선감척사업 기초자료
- TAC(총허용어획량) 물량배정
- WTO, FTA 협상 양허안 및 영향분석 기초자료
- 어획금지 품종지정, 어획금지 기간설정 등 수산자원관리
- 어업협정,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의 수산자원 보전 기초자료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육아휴직통계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 042-481-1283]

☐ 통계개요

- (목적)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활용 자료)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11종)를 연계·활용하여 작성
- (작성 대상)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공무원, 고용보험 자료의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근로자
- (작성 항목)
 - ① 전체 육아휴직자 ②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 ③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 ④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 ⑤ 1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 현황 ⑥ 출산 전·후 모의 취업 비율
 - ⑦ 출산휴가자 ⑧ 모 출산휴가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 (작성 주기) 연 1회/익년 12월 잠정 수치 공표, 익년 12월 확정 수치 공표

☐ 정책활용 사례

- (활용분야) 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책부처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 법령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고용통계과, 담당자 : 042-481-2339]

□ 조사개요

- (목적) 국내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한국 생활실태, 취업 및 실업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민자 관련 사회통합정책, 인력정책 등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 *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 조사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허가자
- (조사항목) 공통항목과 특성항목으로 구성
 - 공통항목: 매년 조사 항목과 2년 주기 순환 조사 항목
 - (매년 조사) 기본항목, 고용 I, 한국어 능력, 체류사항
 - (순환 조사) 고용 II,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보건, 한국 생활, 자녀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 특성항목: 특정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연도별 순환조사
 - (홀수년) 비전문취업, 유학생, (짝수년) 재외동포, 영주·귀화허가자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법무부) 국내거주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및 업종별 허용인원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지표로 결혼이민자의 고용률 및 취업자수 등 현황
- (교육부) 유학생의 취업경험, 취업기간, 취업장소 및 향후 진로계획 등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향과, 담당자 : 042-481-2258, 2251, 2284]

☐ 조사개요

- (목적)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
 -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신고된 출생·사망·혼인·이혼
- (공표주기) 매월 월간 및 매년 연간 공표
 - 인구동향(매월), 출생(잠정: 매년 2월, 확정: 매년 8월), 사망(잠정: 매년 2월, 확정: 매년 9월), 혼인·이혼(매년 3월), 다문화인구동태(매년 11월)

☐ 정책활용 사례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지원정책 및 보건의료정책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출산순위별·모의 연령별·다태아별 출생아수 등 출생통계 자료를 활용
 - 보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 * 지역별/출생장소(병원 등)별 출생아수 통계로 산부인과 구축에 활용 및 사망자수 및 사망자 연령, 사망원인별 통계를 기초로 의료기관 수요 및 집중 대상 파악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

- 주택수요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총 혼인 건수, 혼인종류별(초혼·재혼) 및 시도별 혼인 건수 등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다문화가족 지원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다문화가족의 혼인 및 이혼 건수, 다문화가족의 출생 및 사망자수, 다문화유형(귀화자, 외국인 구분)별 및 국적별·시도별 현황 등

○ (성평등가족부·법무부) 결혼중개업 및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방향과 대상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추이,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국적별·연령별 혼인 및 이혼 건수, 외국인 배우자 상대국의 변동 추이를 통해 정책대상 파악 등

□ 법령 활용 사례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합계출산율, 총출생아수 추이, 모의 연령별 출산율(청소년 출산율)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모자보건 정책 대상과 규모를 파악

<관련 법령 예시>

모자보건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모자보건사업</u> 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에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3조(부가급여) ② 제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생성(혼인)·해체(이혼)·확대(출산)에 관한 자료 및 외국인 배우자 현황, 매년 이혼건수 등을 통해 정책 대상과 규모를 파악

<관련 법령 예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u>지원대상자</u> 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4. <u>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u>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장래가구추계

[인구동향과, 담당자 : 042-481-2284]

□ 조사개요

- (목적) 장래에 예상되는 가구규모,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가구 구조에 대한 전망치로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 고령자, 여성, 아동 등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주택·교통·전력 등 지역 수요예측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각종 가구단위 표본조사의 모수추정용 등으로 활용
- (대상 및 내용)
 - 추계기간 : 전국, 시도 향후 30년간
 - 추계대상 : 일반가구(친족가구, 비친족 5인 이하 가구, 1인가구 등)
 - 시설·특별조사구, 6인 이상 비친족 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 작성내용 :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가구, 가구유형별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등
- (공표주기) 2~3년

□ 정책활용 사례

- (국토교통부,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장기주거종합계획 수립*(10년마다)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매년)
 - * 제1차: '03년~'12년, 제2차: '13년~'22년, 제3차: '23년~'32년
 - ☞ 가구수를 활용하여 주택 수요의 장기적 변화에 대한 예측

- 도시·군 계획 수립(10년마다, 0년 기준 작성, 5년 기준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기본계획 수립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환경 개선 정책(부정기)

☞ 1~2인 가구 현황

○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종 가족복지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가구, 고령자 가구 등

○ (국가데이터처) 각종 가구단위 표본조사의 모수 추정용으로 활용

* 가구의 성별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수 등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장래인구추계

[인구추계팀, 담당자 : 042-481-2261, 2514]

□ 조사개요

- (목적) 연금 및 재정 등 국가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계획 및 장래가구추계 등 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추계기간 : 전국은 향후 50년간, 시도는 향후 30년간
 - 추계대상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 (외국인 포함)
 - 작성내용 : 성 및 연령별 인구, 부양비, 중위연령 및 평균연령, 장래생명표(기대수명 등), 장래 인구변동요인 등
- (공표주기) 2~3년

□ 정책활용 사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연금관련 재정추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건강보험, 보육수당 등 이용대상자 추계, 저출산 및 고령화 종합대책
-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 재정전망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교육부) 교원수급, 학생 및 학교 수급추계
- (정책지표) 1인당 국민소득, 천명당 주택수 등 주요 정책지표 작성시 추계인구 사용
- (국가데이터처) 각종 사회조사 표본 승수 작성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1.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70호)

4-2-5. 인구

(1) …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도종합계획 상 인구지표와 국가데이터처 인구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기타 고려사항

- ① 산출된 인구지표가 상위계획상의 지표 또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추계치와 상이할 경우 각 지표(국가데이터처의 인구추계치를 포함한다)간 신뢰도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4.>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중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 ④ 기획재정부장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6.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7. 유아교육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8.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 ②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학생 수 추계 및 예측

주택소유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042-481-2544]

☐ 조사개요

- (목적) 주택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총 주택 중에서 개인 및 가구에서 소유한 주택 현황,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성별·연령별 분포 등 인적 특성, 주택소유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현황 및 가구주 특성 등을 파악

※ 법인, 국가, 지자체 등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공표주기) 매년(최초 공표 2013.12.27)

☐ 정책활용 사례

-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특히 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에 관한 정책수립 시 매우 필요한 통계
 - (국토부) 새로운 주택정책 비전수립과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주택종합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재부) 투기지역 등의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가구의 주택소유율 변화 추이 분석, 주택자산 가액 기준의 소유 집중도 등 입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주거지원 정책 및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등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지역별고용조사

[고용통계과, 담당자 : 042-481-2271]

□ 조사개요

○ (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
-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

○ (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조사대상주간(15일이 포함된 주)에 약 23만 2천 표본 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 현역군인, 사회복지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 조사내용
 - 기본항목 : 취업시간, 구직활동 등 30개 항목
 - 부가항목 : 상반기 1개, 하반기 4개 항목
(경력단절여성, 맞벌이가구, 전공학과, 노동이동 등)

○ (공표주기) 반기

□ 정책활용 사례

○ (기획재정부) 기업투자활성화 세제지원 정책, 고용정책 등

⇒ 시군구별 고용현황 및 인구·취업자 수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 기초자료

⇒ 시군구별 취업자수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및 지역일자리대책 등
⇒ 시군구별 고용현황 및 산업·직업별 세분류 자료, 전공학과 등
인적정보
-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지원 정책 및 지역
성평등지수
⇒ 경력단절여성현황, 맞벌이 가구 현황, 자녀별 여성의 고용현황 등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복지통계과, 담당자 : 042-481-2276]

□ 조사개요

- (목적)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 (대상) 전국 초·중·고 학부모 약 74,000명
- (조사내용) 일반교과, 예체능 관련 과목별·유형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 * 유형별: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교육부)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 정책근거
 - 초등 단계 돌봄, 예체능 등에 대한 공공돌봄 서비스 및 다양한 체육 예술 활동 지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등 정책 근거
 - * 초중고사교육비조사결과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 참고
- (교육부) 영어, 수학 등 수능관련 공교육 강화
 - EBS 수능연계 및 교과중심 EBS 교육방송의 수준별 학습 콘텐츠 확대, 유료강좌를 무료로 전환 등 다양한 학습 지원 활성화
 - * 초중고사교육비조사결과 영어, 수학 등 사교육비 및 EBS 교육방송 이용현황 참고
- (교육부)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 경감
 - 학교평가 및 입시 시험출제가 학교 교과과정 범위 내 법제화
 - * 초중고사교육비조사결과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 참고

□ 법령 활용 사례

- (활용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통하여 교육분야 법령 관련하여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통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

인구동태패널통계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 042-481-1291]

☐ 조사개요

- (목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근거 기반의 저출생 정책 마련 및 효과 분석 등을 뒷받침
- (대상) 국내에서 출생 신고한 '83~'95년생 내국인 전체
- (작성내용) 경제·사회적 특성*별 혼인·출산 현황, 혼인·출산 변화 비율, 육아휴직 사용 여부별 추가 출산 비율
 - * 거주지(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종사상지위(상시근로자 여부), 상시 임금근로 소득(평균 초과, 이하), 기업규모(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공공기관·비영리기업 등), 자산(주택소유여부)
- (공표주기) 1년

☐ 정책활용 사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 분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활용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정책 지원 기초자료 활용
- (양성평등부) 양육·돌봄 관련 양성 평등 실태 파악
- (기타) 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청년층 혼인·출산 실태 연구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 사항 없음

가계생산위성계정

[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 042-481-3638]

□ 통계개요

- (목적)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사노동의 적절한 인정·평가와 성장 및 복지정책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국민계정체계 생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 내에서 생산·소비하는 가사 및 개인서비스와 자원봉사
 - (작성내용) 무급 가사노동가치, 고정자본소모, 중간소비, 총산출
- (공표주기) 5년

□ 정책활용 사례

- (국가데이터처)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가족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의 정책과제인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의 세부과제**로 추진
 - *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18.8.31.)
 - ** 가사노동을 가치화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을 과제로 추진
- (연구기관*) 여성정책 관련 이슈, 무급 노동의 생산적 활동지원, 사회통합 측면 등의 정책연구, 돌봄사회화와 돌봄경제 관련 분석연구 등에 활용
 -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여성정책연구원, '19), 사회통합 측면에서 가계생산 위성계정 활용사례 및 활용방안(보건사회연구원, '19), 가사(家事)노동 효율화와 산업의 변화(하나금융연구소, '19),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월간 노동리뷰, '20)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국민대차대조표

[소득통계과, 담당자 : 042-481-2214]

☐ 조사개요

- (목적)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를 측정하여 각 경제주체와 국민경제의 순자산(國富)을 파악
 -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및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 측정 등에 활용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전국의 가계, 기업 및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부채
 - (작성내용) 자산계정¹⁾, 제도부문²⁾ 및 경제활동별³⁾ 계정
 - 1)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를 기록하며 비금융자산(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토지자산 등), 금융자산·부채(화폐용금과 SDRs,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등)으로 구분
 - 2) 비금융법인,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하는 자산 규모
 - 3) 경제활동별(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기록
- (공표주기) 연간(익년 7월 중순)

☐ 정책활용 사례

- 잠재성장률 예측(KDI), 산업별 생산성분석(생산성본부) 및 국가전체 및 각 구성 경제주체들의 재정상태 및 건전성 평가에 활용*
 - *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국민이전계정

[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 042-481-3638]

☐ 통계개요

- (목적)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 간 경제적 자원 흐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수립·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 정부 재정운용, 재정부담의 세대별 재배분, 세대간 공적·사적이전 등에 관한 지표*를 제공

* 노동연령층의 잉여자원이 유년층 또는 노년층으로 이전(Transfer)되는 정보

- (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소득, 소비, 이전 등의 연령별 규모
 - (작성내용) 국가 총액 규모 총량값, 연령별 생애주기적자(소비-노동소득), 공공연령재배분(공공이전+공공자산재배분), 민간연령재배분(민간이전+민간자산재배분)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부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

*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 적용

- (연구기관*) 인구변화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 평가, 재정전망 등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북한벼재배면적조사

[농어업통계과, 담당자 : 042-481-3671]

☐ 조사개요

- (목적) 북한지역 벼 재배면적 통계제공을 통한 대북 농업정책 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북한 전역의 벼 재배 가능한 논 경계 모집단을 2ha단위 공간 표본추출틀로 구성하여 추출한 15,986개 표본조사구(약 3만2천ha) 대상
- (조사방법)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벼 재배 가능한 논 모집단을 구축하고 당해 벼 재배시기(5월~9월)에 촬영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벼재배 유무를 판독 후 면적 산출

※ 활용영상 : 아리랑3호·3A호, 국토위성1호(공간해상도 0.5m~0.7m급 : 국내)
및 PlanetScope(4m급 : 미국)

- (조사항목) 북한 시도별 논 면적, 벼재배면적, 두렁면적
- (작성 및 공표주기)
 - 조사기간 : 5월 ~ 12월
 - 공표주기 : 매년

☐ 정책활용 사례

- (농촌진흥청) 북한 쌀 생산량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타) 북한 관련 정책수립 시 농업정책 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연금통계

[행정통계과, 담당자 : 042-481-3643]

□ 통계개요(총괄편)

- (목적)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복지 정책 수립·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대상 및 내용)
 - (가입자) 연금제도(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1개 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18~59세 및 60~64세 연령의 내국인
 - (수급자) 연금제도(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중, 1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60~64세와 65세 이상 연령의 내국인

구분	작성 항목
1) 기본현황	(인구) ① 성별 ② 연령 ③ 지역(시도) (가구) ④ 가구원수 ⑤ 가구유형 ⑥ 거처종류
2) 경제활동	① 종사상 지위 ② 산업대분류 ③ 종사자규모 ④ 조직형태
3) 주택소유	① 개인(또는 가구) 주택 소유 여부 ② 개인(또는 가구) 주택 소유자산가액
4) 연금 수급 현황	① 개별 연금 수급 여부 ② 개별 연금 수급기간 ③ 개별 연금 월평균 수급금액 ④ 개별 연금 수급률 및 동시 수급률 ⑤ 연금조합별 동시 수급자(가구)
5) 연금 가입 현황	① 개별 연금 가입 여부 ② 개별 연금 가입기간 ③ 개별 연금 월평균 연금보험료 ④ 개별 연금 가입률 및 동시 가입률 ⑤ 연금조합별 동시 가입자(가구)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공·사적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각종 연구 활동 지원
 -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 제도와 관련된 법안비용추계 및 재정전망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통계개요(퇴직연금편)

- (목적)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대상 및 내용) 기준시점(12월말) 사업장에 종사 중인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및 도입 사업장

작성 단위	작성 항목
가입자	① 가입률 ② 제도유형 ③ 가입기간 ④ 근속기간 ⑤ 산업분류 ⑥ 적립금액 ⑦ 성 ⑧ 연령 ⑨ 종사자규모 ⑩ IRP 추가 가입
사업장	① 도입률 ② 제도유형 ③ 도입기간 ④ 산업분류 ⑤ 종사자규모
운용계좌	① 금융권역 ② 제도유형 ③ 운용방식
수급자	① 중도인출 ② IRP 이전 ③ IRP 해지 ④ IRP 이전 예외 ⑤ 성 ⑥ 연령

※ 행정통계의 특성상 사업자 등록, 사회보험 가입, 국세 납부 등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업장·근로자만 작성 대상에 포함

- (공표주기) 연간

□ 정책활용 사례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평가와 연구활동을 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 퇴직연금정책의 효과를 점검, 정책 개선사항에 환류
 - (국민연금보험공단) 다층노후소득보장 추계모형 구축에 활용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지역소득

[소득통계과, 담당자 : 042-481-3764]

□ 조사개요

- (목적) 각 지역의 경제활동 및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소득순환(생산→분배→지출) 중심으로 측정·기록하여 각 지역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대상 및 내용) 17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및 총지출
- (공표주기) 연간(잠정: 익년 12월, 확정: 익익년 12월)

□ 정책 활용사례

- ('이재명 정부' 중점 전략과제)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 과제의 목표지표로 비수도권 GRDP 비중*을 사용
* 비수도권 GRDP 비중 50% 회복 목표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의 지역 안분 시, 지역소득통계 공표항목 중 하나인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안분지표로 사용
-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시도별 핵심 성과 지표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사용

□ 법령 활용사례

-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항
 -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조문에서 직접 인용 등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말한다.

통계인력및예산조사

[사회통계심사조정과, 담당자 : 042-481-2081]

☐ 조사개요

- (목적)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인력과 예산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통계 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국가승인통계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으로 정의된 모든 통계작성기관(434개 기관(2024.7.1.기준)) 및 그 기관내의 통계관련 업무 담당자
- (조사내용)
 - 통계인력 현황
 - 성별, 연령, 통계관련 주된 담당업무, 통계업무 전담정도, 교육 정도(최종학력 기준), 전공학과, 종사형태, 통계업무 경력, 통계 교육 이수기간(지난 2년간 합산), 통계교육 미이수 사유, 자격증 취득, 통계활용수준
 - 통계예산 현황
 - 2024년 승인통계별 예산(전체)
- (공표주기) : 2년

☐ 정책활용 사례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작성의 기초자료

☐ 법령 활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